

- 0심의.의결레짐은 위원회 업무처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그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되, 신고사건, 제도개선 권고안 등 분야별로 구분하였습니다.
 - 의결사항은 의안개요, 의결이유 또는 심의내용, 의결결과, 감사원.대검찰청 등 조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수록하였으며, 작년 제1집 발간시 처리 중이었던 신고 건에 대한 결과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보고사항은 목차만 수록하되, 주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지를 첨부하였습니다.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은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 이 자료집은 매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기념일('02.1.25)에 맞추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第1部 議決事項

I. 申告事件

1. 공직자의 겸직금지위반 및 주식 부당취득	13
2. 공립학교 교사의 부당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14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골프장 건설 관련 부패행위	15
4. 병역특례대상자의 불법 근무행위	16
5. 사건 담당 경찰관의 뇌물수수	17
6. 검경 직원의 금품수수 및 갈취	18
7.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19
8. 파출소 소장의 직권남용	20
9. 자활후견기관의 국고보조금 횡령	21
10.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22
11. 공무원의 납품 검수 관련 비리	23
1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24
13. 직업전문학교 설립 인가 및 감독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25
14. 세급감면 청탁 및 감사권 유린 부패행위	26
15. 공립 중학교 서무부장의 뇌물수수 등	27
16. 아동복지시설 관련 보조금 횡령	28
17. 재향군인회 구(區) 회장의 공금횡령	29

18.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30
19.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	31
20. 기업의 특별부가세 등 탈세 관련 비리	33
21. 교육감의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34
22. 시립 연주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	35
23. 대학교수의 논문 표절 및 연구비 횡령	36
24. 공공기관의 구내 매점 부당 운영 부패행위	37
25. 공무원의 건설 공사 수주 관련 뇌물 수수	38
26. 벤처기업체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39
27. 기술혁신 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	40
28. 장비 고가 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1
29. 토지보상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42
30. 공공기관 연수시설 임대 관련 뇌물수수	43
31. 국고보조금 등 횡령	44
32.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45
33.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예산낭비	46
34. 벌인세 등 탈루 및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47
35. 주유소 진입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패행위	48
36.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비리	49
37.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과다 지원 부패행위	50
38.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51
39.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52
40.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53
41. 무허가 주차빌딩 불법 방치 등 부패행위	54
42. 경찰관의 선거사범 수사 관련 부패행위	55

43. 군의회 의장의 이권개입 등 비리	56
44.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특혜의혹	57
45. 공무원 보직 변경 관련 뇌물 수수 비리	58
46.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부패행위	59
47. 전국태권도대회 유치 관련 지원금 횡령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위조 등	60
48.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유기	61
49. 영입보상 비대상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낭비	62
50. 공공 재단법인 감사의 공금 횡령 등 비리	63
51.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 관련 부패행위	64
52. 기술혁신 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 신고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65
53. 국유지 점용허가 관련 위법행위	66
54. 공기업의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	67
55. 태풍 루사 피해지원금 과다 지급 비리	68
56.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69
57.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출장비 횡령	70
58.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71
59. 북한강변 불법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묵인	72
60.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 계약 관련 부패행위	73
61. 구청 직원들의 공금 횡령	74
62. 근로감독관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75
63. 국제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76
64.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예산낭비	77
65. 세무공무원의 탈세 관련 뇌물 수수	78
66. 혈액원의 혈액 부당 관리 관련 부패행위	79

67. 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	80
68. 교통경찰관의 뇌물수수	81
69. 경찰공무원의 직위 이용 불법행위	82
70. 공무원의 불법 기부금품 모집 등 부패행위	83
71. 제약협회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행위	84
72. 국유지 임야의 특례 매각 관련 부패행위	85
73. 불용품 매각 일괄 관련 비리	86
74. 하천공사 관련 블록의 조달 관련 부패행위	87
75. 전국태권도대회 지원예산 횡령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위조사건에 대한 제조사 요구	88
76. 무보험차량 불법 영업 방치 등 직무유기	89
7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I)	90
78. 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91
79. 공기업직원들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제조사요구	92
80. 공공 재단법인의 고용 보험료 징수 비리	93
81.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94
82. 구청공무원의 예산 부당집행	95
83. 공무원의 관용차량 부당 사용 부패행위	96
84. 무기개발사업 관련 예산낭비 부패행위	97
85.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업체선정 관련 비리	98
86. 공립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비 부당집행	99
87. 군사법원 재판 관련 항응 수수 비리	100
88. 농업경영개선자금 부당 대출 및 정부양곡 부실관리 비리	101
89.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사건 제조사요구	102
90. 신병 부대 분류 관련 병무비리	103
91.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학회 경비 부당 수수	104

8. 구의회 의장의 직위 이용 남품 및 탈세 비리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4
9. 군청 등의 예산 낭비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5

III. 制度改善

1. 감척어선사업제도 개선 권고안	159
2.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162
3. 병력특례제도 개선 권고안	166
4.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171
5.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174
6. 정치자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80
7. 면세유공급제도 개선 권고안	184
8.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	189
9.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 개선 권고안	192
10. 농지전용제도 개선 권고안	196
11. 산지전용제도 개선 권고안	197

IV. 例規訓令, 其他

1.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운영지침안	201
2. 부패방지위원회윤리규정 개정안	219
3.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237
4.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추가)	238
5.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계획안	290
6. 신고사무운영지침 개정안	244

9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II)	105
93. 공무원의 조달물품 하자 교체 관련 비리	106
94.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107
95. 경매조작사건 수사 및 증거물 감정 비리	108
96.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사건의 제조사요구	109
97.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이의신청	110
98.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의 면세유 부정사용 등	111
99.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횡령 부패행위	112
100. 국유지 불법매각 부패행위	113
101. 공립학교 교사들의 부당 금품수수	114
102.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예산낭비	115

【追錄】

[2002年度 申告事件 追錄]	117
------------------	-----

II. 申告者 保護.補償

1. 신분 보장 조치 요구(I)	147
2. 신분 보장 조치 요구(II)	148
3. 신분상 불이익 처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I)	149
4. 신분 보장 조치 요구(III)	150
5. 신분상 불이익 처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II)	151
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2
7. 신분 보장 조치 요구(IV)	153

報告目錄

I. 報告目錄

II. 主要 報告要旨

1. 200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25
2. 2002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28

【附錄】

1.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233
2. 전원회의.분과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303
3.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명단	305

第 1 部



議決事項

- I. 申告事件
- II. 申告者 保護・補償
- III. 制度改善
- IV. 例規・訓令, 其他



I. 申告事件



제24차 전원회의(2003. 1. 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 산하기관에 재직하는 공직자인 바, 복무규정상 기업체 경영이나 설립 등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사적 기업체 설립을 주도해 오면서, - 2000. 3.경 자신이 근무하는 정부 산하기관 구내식당을 위 기업체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장소로 제공하고, - 2000. 5.경 위와 같은 기업체 설립 활동 대가 등 명목으로 위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주식 15만주 시가 7,500만원 상당을 부당 취득하고, 위 기업체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및 회사 관계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하면서 소정 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그 직무 관련 대가성 불분명한 점 등 고려하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과학기술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을 상대로 징계 요구 (겸직금지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각 위반의 점과 공공시설의 사적용도 이용의 점 모두 인정됨, 다만 주식 부당취득의 점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거래행위에 불과하므로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3. 2.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4차 전원회의(2003. 1. 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 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태권도부 감독인 바, -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태권도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국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태권도 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코치 수당 명목으로 금 960만원을 각 수수하고, - 위 같은 기간 사이에 전국 대회 출전 관련 식대 및 숙박비 합계금 540만원을 업무상 보관중, 개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함	
2. 의결이유 ○ 태권도부 학부모회 일부 관계자의 진술내용과 학부모회 경비지출장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 ※ 토의사항 : 학교 관련 각종 기금 모집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안 검토후 필요시 권고하기로 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혐의(연맹관계자 접대비 300만원) 불구속 입건, 그 의 혐의는 내사종결(자발적 모금으로 강제성 없고, 횡령 등 혐의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4.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34호 (2003. 9. 22.)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제25차 전원회의(2003. 2. 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서, 골프협회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상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2002. 1.경 골프장 조성 관련 시찰 명목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위 협회 관계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부당 지원 받고, - 그시경 위 협회가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약 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위 골프장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 충분치 아니하나, 일부 신고 내용과 관련된 고발사건이 검찰청에 계류되어 수사중에 있으므로 병합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인 협회관계자 1명은 공소제기하여 약식 명령 청구(관광비명목의 뇌물공여) - 피신고자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단, 행사관련 예산지원 등은 의회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는 등 범죄혐의 인정 곤란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4. 2.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5차 전원회의(2003. 2. 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동 대학교 부설 연구소(병역특례 지정업체)의 감독책임자인 바, - 2001. 1. 실제로는 사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원생 3명을, 병역특례 지정업체인 위 연구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 ※ 제2002-15호(병역특례대상자 위장취업 비리), 제2002-64호(동 사건의 재조사요구)와 관련된 신고사건으로, 위 사건들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가 불복, 새로운 증거 자료 제출과 함께 재신고	
2. 의결이유 ○ 대학원생 3명의 사기업체 근무사실은 아르바이트로 야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병역특례자의 위장 불법 근무행위와 피신고자의 감독 의무 태만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 사건 처분결과('혐의없음')에 대하여, 신고자는 사기업체 출근 관련 장부 등을 조사하면 대학원생 3명의 위장 불법 근무(주간에 정기적으로 사기업체에 근무) 사실이 명백하게 규명된다고 주장함 ○ 출근 관련 장부의 기재내용과 위 사기업체 관리 직원의 진술내용이 신고자의 주장에 부합되므로 병무청으로 이첩하여 불법 근무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병무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법 근무행위 인정되므로 위 대학원생 3명은 각 복무기간의 연장조치, 위 연구소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 ※ 통보일자 : 2003. 3.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3-86호 (2003. 7. 7.) 『병역특례 제도 개선 권고안』

제26차 전원회의(2002. 2. 1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 마약반 소속 경찰관인 바, - 2002. 7.경 마약 관련 지명수배 사범 1명을 검거후 조사함에 있어, 특별면회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사건을 선처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금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하게 인정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비위혐의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 ※ 통보일자 : 2003. 5.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행사 일건 없이 징계 처분된 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 요구한 바, 조사기관이 피신고자의 근무 경력, 비위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므로 이를 수용)
5. 비고	

제26차 전원회의(2003. 2. 1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경찰관이고, 같은 B는 검찰청 기능직 직원인 바, - 위 A는, 2002. 5.경 신고자와 관련된 사기 사건의 선처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 위 A,B는 신고자와 사이에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02. 7.경 금융기관으로부터 1,4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건의 불법 대출금 약 8,000만원 상당을 수령한후, 신고자의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금원을 갈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예금통장 사본의 입·출금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대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편취 등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각 혐의없음 (피신고자들의 편취 혐의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고자의 관련 무고 혐의 인정되어 동인을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3. 11.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6차 전원회의(2003. 2. 1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제2002-128호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신고 사건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고자가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위 신고사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조사결과, 신고자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진정 거래임이 확인되었는 바,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이나 새로운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이상 신고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할 자료가 없음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28호 (2002. 11. 4.)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제2003-18호	파출소 소장의 직권남용
-----------	--------------

제27차 전원회의(2003. 3.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2002. 7.경 파출소 부근 쇼펍센터 관계자로부터, 주차 단속 선처의 부탁과 함께 정수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파출소 소속 직원들에게 주차 단속의 자제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 그 무렵 파출소 부근 중학교 교사로부터 동 학교 소속 학생들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 선처 부탁과 함께 금 20만원을 교부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 사실 주장에 비추어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비위사실 인정되나, 개인 용도 전용 없는 등 사안 중하지 아니하므로 '계고' 처분함 ※ 통보일자 : 2003. 4.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9호	자활후견기관의 국고보조금 횡령
-----------	------------------

제27차 전원회의(2003. 3.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후견기관의 관장, 같은 B는 행정을 담당하는 실장인 바, - 위 A는, 2001. 3.경 타인 명의로 등록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위 자활기관에 입차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후 1년간의 입차료 약 3,487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위 자활기관에 대한 면세유 세금 환급금 42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 위 B는, 2002. 10.경 위 자활기관 소유의 농업 자재 약 40만원 상당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후, 동 금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내용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들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각 혐의없음(다만, 피신고자와 소속 직원 등 4명에 대한 별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는 각 불구속 입건) ※ 통보일자 : 2003. 5.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함
5. 비고	

제2003-20호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	-----------------------

제27차 전원회의(2003. 3. 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고, 같은 B를 비롯한 공무원 4명은 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 감독 공무원들인 바, - 위 A는,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사이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표준 안전관리비 허위 집행사실을 적발한후,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동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선처 부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합계금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 위 B 등 공무원 4명은, 위 같은 기간내에 위 현장소장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선처 부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합계금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위 A를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등죄로 불구속 입건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5명을 각 불구속 입건, 뇌물공여자 1명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입건 ※ 통보일자 : 2003. 4.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21호	공무원의 납품 검수 관련 비리
-----------	------------------

제27차 전원회의(2003. 3. 3.)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으로 조달 물품의 검수 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 1998. 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하자가 명백한 부품을 조달받아 검수함에 있어 하자를 묵인하여 주고 액수 미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 위 부품의 하자 교체를 위하여 수익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게 하는 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납품된 부품의 비규격 사실에 부합하는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 인정되므로,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소속 기관에 대한 '주의' 촉구 (당초 계약과 다른 규격의 납품 사실 인정되나, 이미 하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이 납품자의 부담으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피신고자의 뇌물 수수 등 유착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03. 8.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62호 (2003. 12. 1.) 「공무원의 조달 물품 하자 교체 관련 비리」

제28차 전원회의(2003. 3. 1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인 바, - 2001년경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센터 신축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디자인 공모 당선을 명목으로 유착된 특정업체와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부당 설계변경을 통하여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국가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부당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는 명확치 아니하나, 관련 공사 자료에 의하면 부당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과다 지급 혐의에 대한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문책(1명 훈계, 1명 감봉 또는 견책) 조치 요구 (부당 수의계약, 예산낭비 및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은 인정키 어려우나, 예산미확보 상태에서 무리한 선시공과 개관일 이후 일부 추가 공사 시행 등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 인정됨) ※ 통보일자 : 2003. 5.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8차 전원회의(2003. 3. 1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직업학교 설립 인가 및 감독 담당 공무원들로서, - 1999년경 법인 기본 계산의 부족 등의 결격 직업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등 학교의 학장(퇴직, 現 시립 연주단체 책임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상품권, 현금 합계금 33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양주 및 한우갈비 시가 수백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각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수첩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각 혐의없음 (일부 소액 금품 수수의 점은 인정되나, 직무 관련 대가성 등 뇌물죄의 범죄구성요건 충족되지 아니함) ※ 처리결과 통보 : 2003. 8.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다만, 신고자가 조사결과에 불복하면서 특히 직업전문학교의 설립 요건 흠결 부분에 대한 판단 유탈을 주장하므로, 아래의 관련 의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44호 (2003. 4. 21.) 「시립 연주단체의 국고 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	

제28차 전원회의(2003. 3. 1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세청 공무원들로서, - 2001. 9.경부터 2002. 9.경까지 사이에 관할 지역 4개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합계금 95억원 상당의 세금 탈루 사실이 발각된 것과 관련하여, 등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위 세무조사 관련 담당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외압을 행사하고 관련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 파괴하는 등으로 탈루 세액 추징 절차를 중단시키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이 신고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을 직권남용 및 공문서 변조 등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관련업체에 대한 세금부과는 필요조치 후 통보토록 조치) ※ 통보일자 : 2004. 4.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9차 전원회의(2003. 4.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 중학교의 서무부장으로서, - 2002. 9.경 학교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 13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 2002. 12.경부터 2003. 2.경까지 사이에 학교 비품으로 디지털 인쇄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시가에 비교하여 430만원 이상의 고가로 구입하고, 학교의 외벽 도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정사가에 비교하여 990만원 이상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 2002. 12.경 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 288만원을 지급받아 보관중, 그시경 동 금액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지출결의서 사본 등 관련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일부 혐의)와 관련 편취 사범 1명을 각 불구속 입건 ※ 통보일자 : 2003. 6.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무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요구)
5. 비고	

제2003-35호	아동복지시설 관련 보조금 횡령
-----------	------------------

제29차 전원회의(2003. 4.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아동 복지시설의 원장이고, 같은 B는 동 복지시설의 총무로서, 공모하여, -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위 시설의 수용 아동수를 실제의 인원보다 과대 계상하여 각종 보조금 명목의 합계금 3,800여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허위 발행하여 관계자들에게 교부하여 동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위 B는 업무상 횡령죄로 구속 기소, 위 A는 내사종결(위 B와 공모관계 인정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3. 7.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36호	계항군인회 구(區) 회장의 공금횡령
-----------	---------------------

제29차 전원회의(2003. 4.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한민국 계항군인회 구(區) 회장인 바, -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상급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회장 활동비 115만원, 여직원 급여 100만원, 월드컵 봉사자 지원금 750만원, 보훈의 달 운영자금 580만원, 순찰봉사대 활동비 550만원 등 수천만원의 공금중 일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2. 의결이유 ○ 관계자의 진술 내용과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지원금중 일부 금원을 특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나, 다만 개인적 용도로 전용한 구체적 증거는 불충분함을 고려하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국가보훈처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 (일부 지원금의 용도의 사용 사실은 있으나 개인 용도 전용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신고자가 사직의 결과로 이미 책임을 부담한 점 참작) ※ 통보일자 : 2003. 6.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37호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	--------------------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폐기를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 1998.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폐기를 처리 업체 경영 자금 45억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은 후, 회사 수익금 및 자산 처분 등으로 위 용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자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폐기를 처리업체는 고의로 부도를 내어 채무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공공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토의사항 : 민간인이 부패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해석상, 주체를 공직자로 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 체결 및 이행상의 손실 초래행위는 민간인의 행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석 가능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 (재산의 허위양도, 은닉, 손괴, 채무면탈은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4. 1.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38호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
-----------	------------------

제29차 전원회의(2003. 4.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제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자이고, 같은 B는 제14,15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국회의원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 위 A는, 1997. 2.경 석탄 수입업자로부터 자신이 수입한 석탄을 국내 굴지의 공기업에게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 명목으로 그때로부터 1999. 12.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 위 B는, 1998. 11.경 위 A를 통하여 위 석탄 수입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임		
2. 의결이유 ○ 뇌취록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함이 상당함 ※ 토의사항 : 부패행위의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고발이 반드시 필요적인지 여부(소극, '별지' 참조)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위 A는 구속, 위 B는 불구속으로 각 기소 (뇌물 제공자 1명 및 관련 알선수제 사범 1명 각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3. 6.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별 지>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고발이 반드시 필요적인지 여부(소극)
<p>○ 문제의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법은 제29조 제4항 소정의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첩'에 의하는 보통의 공직자와 달리 '고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그 조사결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특별히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부패행위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반드시 '고발'에 의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그 혐의의 객관적인 정도 등 제탄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이첩', '고발' 양자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패행위 조사 과정에 대하여 그 직권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축소, 은폐할 우려가 높음을 감안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특별히 '고발' 및 '재정신청'을 규정함 -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첩'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모두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기관 고발의 경우에 해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정도와 공소제기의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고, 또한 부패방지법은 그와 같은 취지를 입법화하여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고발'에 의하고, 그 외 경우에는 '이첩'에 의하여 수사를 의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제2003-42호	기업의 특별부가세 등 탈세 관련 비리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 A는 건설업자, 같은 B는 세무공무원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A는, 자신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타회사에 양도하였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특별부가세 81억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 위 B는, 위 A에 대한 세금을 부과 시호가 2004.3.말 완성됨을 잘 알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임. <p>2. 의결이유</p> <p>○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성이 있음</p> <p>3. 의결결과 : 국제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문처리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의 판단에 불구하고, 국제기본법상 과세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 통보일자 : 2003. 9. 17.
	<p><위원회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43호	교육감의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지방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5.경 사무관 승진예정자 1명으로부터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승진 예정자들로부터 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 <p>2. 의결이유</p> <p>○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위 금 1,000만원 수수 관련 녹취록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고자를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 승진 심사 관련 직권남용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3. 4. 22.
	<p><위원회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44호	시립 연주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시립 연주단체의 책임자(前 직업전문학교 학장)인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개최하는 음악축제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경비내역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원의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 등 뇌물을 제공하는 부패행위를 함 <p>2. 의결이유</p> <p>○ 신고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및 위 행사 관련 장부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p>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의 없음 (일부 비용 과다계상 사실은 인정되나 단체 운영비 사용 이의 개인 용도 전용 사실 없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소액의 명절 선물 제공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3. 8. 27.
	<p><위원회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다만, 관련 의안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과다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 요구)
5.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의안 : 제2003-26호 (2003. 3. 17.) 『직업전문학교 설립 인가 및 감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제2003-45호	대학교수의 논문 표절 및 연구비 횡령
-----------	----------------------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체육학부 교수로서, - 1999년경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소요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비와 연구보조원 인건비 합계금 1,200여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전용하고, -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에 있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내용을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실험비, 연구 인건비 관련 영수증 기재내용이 실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본건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연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사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주의(구두) 처분 (실제 용처와 다른 영수증 첨부 등은 인정되나, 개인 용도 횡령과 논문 표절 등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8.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46호	공공기관의 구내 매점 부당 운영 부패행위
-----------	------------------------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구내 매점을 운영해 오면서, - 2000년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구내 매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 수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국가 예산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자료에 의하면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사실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감독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 통보일자 : 2003. 11.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52호	공무원의 건설 공사 수주 관련 뇌물 수수
-----------	------------------------

제31차 전원회의(2003. 5.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급 공무원으로서, - 1992. 4.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건설업을 하는 고향 후배로부터 각종 하도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습회에 걸쳐 료싸툼 접대 등의 향응과 경비 명목의 금품 등 시가 합계금 수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녹취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중인 수사기관에서 병합수사가 가능하도록 이첩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고, 일부 소액 향응, 금품 수수 사실은 있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 등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3. 9.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53호	벤처 기업체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	-----------------------

제31차 전원회의(2003. 5.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 2명은 지방세 환급 관련 담당 세무공무원인 바, - 2002. 10.경 지방세 부당 감면에 대한 추징금 19억원을 납입하였던 벤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동 금액을 환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 금액을 부정 환급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서류에 의하여 위 추징금 부정 환급을 위한 비정상적 회사 설립 사실 인정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빙성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 2명 합계금 6,300만원 뇌물 수수죄로 각 구속 기소 (관련 알선 수재 사범 1명 구속 기소, 관련 회사 자금 업무상 횡령 사범 3명 각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3. 7.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54호	기술혁신 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
-----------	-------------------

제31차 전원회의(2003. 5. 19.)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이고, 같은 B,C는 중소기업체 지원 담당 공무원들인 바, - 위 A는, 2001. 8.경 사실은 폐기물 수거 장치 개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당후, 국가로부터 기술혁신 개발자금 6,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위 B,C는, 2002. 2.경 위 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위 기술혁신 개발 자금 지원과 관련한 '현장 경영 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로는 개발 실적이 없음에도, 시험 결과 폐기물 처리 효율 약 70퍼센트 이상이 확인되었다는 허위 취지의 공문서를 작성, 보고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관계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위 자금 지원에 불구하고 폐기물 수거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사실 인정되고, 본건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검찰청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병합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각 혐의 없음 (편취 범의 및 자금 용도 전용의 횡령 행위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7.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01호 (2003. 8. 1.) 『기술혁신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003-56호	장비 고가 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제31차 전원회의(2003. 5.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2-119,120,121,122,123호 『장비 고가 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 낭비』 사건의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이의를 신청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신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신고자의 주장만으로는 제소사를 요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2-119,120,121호 (2002. 9. 16.) 『장비 고가정비 의혹(I,II,III)』 제2002-122,123호 (2002. 9. 16.) 『장비 구매 관련 예산낭비(I,II)』	

제2002-63호	토지보상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	------------------------

제32차 전원회의(2003. 6. 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토지 수용 담당 공무원들인 바, - 2001년경 제방공사를 위하여 토지 수용 및 보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인삼밭의 면적을 10배 정도 과대 조작하고, 포락지에 대한 보상 단가 책정에 있어 주변 토지 시가에 비교하여 3배지 10배 정도의 고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합계금 3억 2천여만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과다 보상 등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면적 과다 계상 부분은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키 어려우나, 초과 지급된 금 1,200여만원은 환수조치함) ※ 통보일자 : 2003. 1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64호	공공기관 연수시설 임대 관련 뇌물수수
-----------	----------------------

제32차 전원회의(2003. 6.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2. 8.경 공공기관의 연수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지급해 달라고 말을 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 그때로부터 2003. 1.경까지 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합계금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내용과 각종 계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건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 2명을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입건 ※ 통보일자 : 2003. 1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2차 전원회의(2003. 6.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통예술 교육 관련 단체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 1998년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전통예술 교육 지원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금 2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	
2. 의결이유 ○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 인정되므로,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 ※ 통보일자 : 2004. 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2차 전원회의(2003. 6.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적공부 등록 관련 공기업 직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0. 5.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주고, 분할 측량이 이루어질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도 없이 분할 측량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주고, 이후 관계기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위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 그 시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내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해 상가를 임차한 수산업자들이 컨틀을 개조후 횡집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이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임	
2. 의결이유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민원제기로 기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항, 토지분할은 지자체의 사업에 따라 지적정리된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사항은 소관기관에서 고발하여 벌금 또는 원상복구 시정명령됨) ※ 통보일자 : 2003.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12차 전원회의(2002. 6. 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인 바, - 2001. 11.경 축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를 납품받음에 있어, 특정 업체에게 독점적인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을 분리발주한 후 특정 업체가 제시한 고가의 견적 가격을 그대로 납품 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고, - 그 시경 가축질병 예방사료를 납품받음에 있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특정업체에게 시가 보다 훨씬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주장에 부합하는 입찰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결과> - 분리발주 부분에 대하여 '주의' 요구 (특정 업체 유착, 고가 납품으로 예산 낭비한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 통보일자 : 2003. 8.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상세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5. 비고	

제32차 전원회의(2003. 6. 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 2002. 2.경 특정 기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의자산 110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 탈루사실을 적발한 다음, 동 기업체 대표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억여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탈루 세액을 축소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회사 장부 등 관련 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정확한 세금탈루 내역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경찰청.국세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기업체 간부 등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송치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혐의점 없음) - 국세청 이첩 내용은 무혐의, 단, 신고자가 국세청에 추가제보하여 금 467,000천 원 추정 조치 ※ 통보일자 : 2004. 2. 23.(경찰청), 2004. 12. 31 (국세청)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3차 전원회의(2003. 6. 1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고, 같은 D는 위 단체 소속 토목과장인 바, - 위 A는, 2002. 7. 20.경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려는 업자로부터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5,0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그때로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금 2,900여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 위 B는, 같은해 9.경 위 A를 통하여 위 업자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관련 신청 부탁과 함께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녹취록 및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위 A를 금 340만원 뇌물수수 및 제3차뇌물취득(위 B에 대한 전달 명목 1,000만원 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 금 340만원 추징 ※ 통보일자 : 2003. 10.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3차 전원회의(2003. 6. 1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위 복지관의 관장, 같은 B는 위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서, 공모하여, - 1999.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위 복지관의 물리치료사 등 직원 수명을 실제로는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월급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복지관에 필요한 기자재를 고가로 구입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 용도로 전용하는 등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개연성 높으므로 위 복지관의 공금집행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3인 고발 조치(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근무서류 조작 및 허위 서류조작으로 기증품을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금537,178천 원을 복지관 운영비 및 부채상환비로 부담집행) - 복지관 운영과 무관한 부채상환금 271,560천 원은 환수 조치 - 관할 감독관청에는 기관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4. 7.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4차 전원회의(2003. 7. 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바, - 2001. 1.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 인원을 과다 계산한 정을 잘 알면서도 등 시설 관계자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당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 어린이집 관계자의 허위 신청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약 1,20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급여내역서 등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복지시설 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관련 공무원 3명 주의조치(관리감독 소홀) ※ 통보일자 : 2004. 4. 6.	
	<위원회 검토의견> - 검토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4차 전원회의(2003. 7.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감독, 행정실장 및 교장인 바, 공모하여, - 2000. 3.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태권도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국 대회 참가비, 훈련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실제 대회 참가 관련 예산은 학교 예산을 사용하고 위 금원은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태권도부 학생 지도 및 감독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참고인들 진술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피신고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그 변명에 참고인들 진술 내용 및 경비지출내역서 등 기재내용이 부합하며, 신고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통보일자 : 2003. 12. 4.	
	<위원회 검토의견> - 사실관계 면밀히 검토하여 재조사 여부 판단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3-171호 (2003. 12. 15.)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의의신청』	

제34차 전원회의(2003. 7.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환경 업무 관련 공무원들인 바, - 열병합 발전소에 납품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과정에 있어, 특정 회사 제품이 실제로는 형식승인 조차 득하지 못하는 등 설치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질의.회시 업무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인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특정 회사 제품의 설치를 도모해 주고, 이후 교정 업무를 방치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고, - 위와 같이 부적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를 통하여 실제 대기오염치 보다 훨씬 과소한 오염치가 측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연간 2억원 이상의 환경 오염 관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주장과 질의.회시 등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종결 처리 (대기오염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오차가 측정되고, 열병합 발전소는 배출 부과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03. 11.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에 대한 상세 검토후 재조사 요구 여부 결정 - 관련의안 : 제2003-165호 (2003. 12. 1.)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행위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5. 비고	

제34차 전원회의(2002. 7.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인 바, - 1998. 8.경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주최측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하고, - 1999. 1.경부터 2000. 2.경까지 사이에, 관내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관급 공사 허가와 관련한 선처를 부탁받고 골프채 2채와 수천만원 상당의 항공 및 현금을 수수하고, - 소속 직원들로부터 관급 공사 관련 뇌물 3,000만원을 상납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녹취록 등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3. 1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당 부분 혐의 인정되었고, 법원의 영장 기각을 통해 불구속 처리된 사정 등을 고려)
5. 비고	

제34차 전원회의(2002. 7.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및 공무원들로서, - 2001. 9.경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건축된 부허가 주차빌딩의 불법 사용행위와 주차장의 사무실 용도로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등을 잘 알면서도, 등 주차장 및 건물 소유주와 유착하여 불법사실을 적발 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현장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불법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담당 공무원은 인사통보 - 건축주.공사시공자에 대한 벌금부과, 시정조치 및 고발 조치 통보 - 관련 건축사 2개소 3명에 대한 자격취소 및 벌금 부과, 고발 조치 통보 ※ 통보일자 : 2003. 12.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4차 전원회의(2003. 7.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관으로 축협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에 종사하던 중, - 2003. 2.경 선거사범 피의사실과 관련된 관계인으로부터 양심선언서 및 1백만원권 우편환증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받았으면, 당연히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거나 송치하는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하고, 해당 피의사건의 수사과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관련 사건이 수사 계류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의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계고조치 (직무유기, 횡령, 편파수사 등 비위 혐의는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절차상 부당 처분으로 물의 야기한 점 인정됨) ※ 통보일자 : 2003. 10.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의회 의장인 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가스충전소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면서, -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내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독점하고, - 그 무렵 가스충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근 도로와 농지를 점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 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직권 남용의 구체적 혐의는 없으나, 관계 서류에 의하면 위 업체의 소유 사실이 추단되는 등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폐기물처리용역 담당 공무원 6명 주의처분 요구 (군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허가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허가과정에서의 위법·부당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04. 1.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해당업체 자진폐업)
5. 비고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역개발 관련 국장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 2001. 7.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도로개설 및 보상 사업 추진에 있어 법령상의 소정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인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있어서의 일부 절차의 미이행 및 인척의 토지 소유 사실이 인정됨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업무소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3명 주의 조치(인척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 ※ 통보일자 : 2004. 4.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 2002. 4.경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보직 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10여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 5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입건 ※ 통보일자 : 2003. 9.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소속 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등 5명인 바, - 공모하여, 2002. 7.경 토지소유자 등의 요건 미비 등 부적격 상태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시행을 신청한 사업자로부터 사업 인가를 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적격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 피신고자들중 실무 담당 공무원 1명은, 같은해 8.경 사업시행지 부근 음식점에서 위 사업자로부터 선처 부탁과 함께 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내용과 관련 사업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재개발사업 인가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심재개발사업 인가 관련 소송이 진행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금품수수 부분은 확인 불가) ※ 통보일자 : 2004. 9.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93호	전국태권도대회 유치 관련 지원금 횡령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위조 등
-----------	---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태권도협회 시,도 협회 및 군 지회 임원들인 바, - 2001. 6.경부터 2002. 4.경까지 사이에,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합계금 1억 5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중, 그 시경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5,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 그 무렵 전국의 태권도 체육관 운영자들을 상대로 태권도 단종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 (나머지 횡령 등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9. 29.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 요구 여부를 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3-136호 (2003. 10. 11.) 『전국태권도대회 유치 관련 지원금 횡령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위조 등 사건의 재조사요구』	

제2003-94호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유기
-----------	---------------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 지사장 및 소속 임원인 바, 공모하여, - 2002. 12.경 공기업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 법상 요구되는 자격 기술자의 고용을 위장한 무자격 업체의 불법을 묵인, 방치한 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업체에 대하여 2003년 입찰 참여 제한의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채 낙찰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특혜를 주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2002년도 입찰 계약과 관련한 징계에 불구하고, 해당 업체와 사이에 2003년 재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3년도 재계약상의 문제점 여부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종결 처분 (관련 서류 확인 결과 자격 기술자의 위장고용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계약의 부당성 단정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3. 10.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검토하여 전원회의에서 재조사 요구 판단 예정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2-57호 (2003. 5. 20.) 『공기업 지사장 입찰 비리』 제2003-140호 (2003. 10. 20.) 『공기업직원들의 직무유기 사건의 재조사 요구』	

제2003-95호	영업보상 비대상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낭비
-----------	-------------------------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청 공무원인 바, - 2001. 10.경 관내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의 영업 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2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금 7,000여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해당 업체의 영업 승계 및 폐업사실 확인 결과 등이 신고자의 주장 내용에 부합함에 비추어,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관련 탈세혐의 부분은 참고자료로 관계기관에 통보)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부당 지급 영업보상금 4,907만원 회수 통보 (관련 비위 공무원은 이미 훈계 처분 받았고, 현재는 징계 시효 도과되어 별도 조치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12.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 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96호	공공 재단법인 감사의 공급횡령 등 비리
-----------	-----------------------

제34차 전원회의(2002. 7. 2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 재단법인의 감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 2001. 4.경 이전비 금 1,300여만원을 재단으로부터 이증으로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 그 무렵 미국 체류중인 가족들의 주택임차료 약 1,500만원 상당을 위 재단법인 전도자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 2003. 3.경 출장 관련 항공권의 일부 수수료 200여만원 상당을 협력 업체로 하여금 대납토록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서류의 일부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일부 자금의 이증 집행 사실은 있으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착오 이외에 범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단법인에 대한 손해 금액을 모두 회복한 점 등을 참작) ※ 통보일자 : 2003. 10.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97호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 관련 부패행위
-----------	---------------------

제37차 전원회의(2002. 8.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공 금융기관 차장 및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소속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발주,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 택지 조성 사업을 주관하면서, - 2003. 1.경 택지조성사업 설계변경 조정 업무 과정에서, 사업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지급을 부탁 받고, 사업 구간내 암석 판정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동 건설업체에게 약 30여억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공공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여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사진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시공사 현장소장, 하도급 업체 대표 의 1, 감리 단장 등 4명 구속(관련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중) - 금융기관 관계자 2명 무혐의 ※ 통보일자 : 2004. 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01호	기술혁신 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 신고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	----------------------------------

제36차 전원회의(2003. 8. 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54호 『기술혁신 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사건의 신고자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며 이의를 신청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폐기물 수거장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개발자금의 전부가 지원되고 그중 상당 부분이 개발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검찰청의 ‘혐의 없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자의 그 주장만으로는 위 처분의 번복 가능성을 기대할만한 제조사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3-54호 (2003. 5. 19.) 『기술혁신 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		

제2003-102호	국유지 점용허가 관련 위법행위
------------	------------------

제37차 전원회의(2003. 8. 1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관내 국유재산인 하천부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업자인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는 경작목적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동인의 점용 허가 허위신청을 묵인한 채 점용허가를 내어 주고, 이에 반하여 그곳을 20년 이상 점유해 오면서 양봉 및 농사에 전념해온 농민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에 위배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발령한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 (국유지 점용허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4. 4.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03호	공기업의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
------------	------------------

제37차 전원회의(2003. 8. 1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의 재개발 사업담당 및 동 사업 관련 민간단체 회장인 바, 공모하여, - 2002. 9.경 위 재개발 사업의 폐기물 반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후 공사비를 10여억원 이상 과다하게 지급하여 동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중 수익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신고자의 진정을 통하여 동일 내용의 수사절차가 검찰청에 계류중에 있고, 신고자 또한 검찰청의 수사를 바라고 있는 등 별도로 내사할 필요성 없음 - 위원회 확보 자료는 검찰 수사 자료로 송부) ※ 통보일자 : 2003. 9.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04호 태풍 루사 피해지원금 과다 지급 비리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서, - 2002. 9.경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관내의 농경지 복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 농민들이 경작면적의 조작과 피해를 과다 산정으로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농지원부 확인 등 조사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합계금 5,200여만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 위와 같은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부당지급한 일부만 환수조치하고, 3개 농가에 대한 합계금 1,000여만원은 환수 조치 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민원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해당지역 태풍 루사 지원금 사업의 적정성과 관계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주민총의에 따른 위로금 균등분배, 당시의 긴급성, 시간 및 인력부족 등을 고려할 때 관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통보일자 : 2004. 5.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08호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소재지 보건소 공무원들인 바, 공모하여, -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영세민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각종 무료 검진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무료 검진 대상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관계 서류를 조작한 후 검진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혐의사실 인정되어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 부당 지급 검진료 부분 환수 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03. 12.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관련부처에 참고자료로 송부)
5. 비고	

제2003-109호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출장비 횡령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 교육청 장학사,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인 바, - 위 장학사는, 2003. 3.경 신규 임용된 교사의 호봉 확정과 관련하여 선처의 청탁과 함께 금 3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 위 교장과 교사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교사들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출장비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 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횡령하고, 초등학교 부근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750만원을 불법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 인정되므로 해당 비위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인 장학사 및 교장 경고 조치(장학사는 현금 등을 보관후 반려, 교장은 일부행사에 기능직 직원을 강사로 채용하여 교외행사에 학생인솔을 지시, 단 출장관련 문공서 위조 등은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3. 12.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10호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립대학교 총장 및 교수 등으로서, 공모하여, - 2002. 10.경 불문학과 전임교수 1명의 신규 임용을 위한 심사과정을 진행하면서, 위 대학교 교원임용규정상 당연직 심사위원인 학장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한 채,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시행지침과 교수 초빙 공고 사항에 적합한 전공자 3명은 탈락시킨 반면, 해당 전공자도 아니고 더구나 박사과정에 대한 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특정인을 임용하여 동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조사결과 전공 적부의 문제 등은 심사자 별로 결론을 달리 내리는 등 적합 여부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 절차의 부적합 문제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주의 촉구 등 ※ 통보일자 : 2003. 11. 13.
	<위원회 검토의견> - 신고자가 조사결과에 불복하며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므로 전원회의에서 재조사 요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3-158호 (2003. 11. 27.)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사건 재조사요구』

제2003-111호	북한강변 불법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묵인
------------	------------------------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공무원 및 공사감리자인 바, -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한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관계법상 음식점의 신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제로는 신축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증.개축으로써 건축이 허용되도록 허가를 내어 주고, 준공 이후 당초 사무실 용도로 허가된 부분까지 음식점 및 노래방 용도로 불법 변경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위법을 묵인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 및 관련 허가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감리자(건축사) 업무정지(6월) 처분 및 고발 조치 -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일부 무단사용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일부 불법증축 부분은 폐쇄조치) - 관련 공무원 2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4. 5.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12호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 계약 관련 부패행위
------------	-------------------------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 계약 및 검수 담당 공무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0. 8.경부터 2002. 4.경까지 사이에 가로판매대 1,000여대를 단체수의 계약 형식으로 발주하여 납품 받음에 있어 특정단체와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위 단체 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신청서를 부탁받음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제보다 훨씬 과다하게 원가 계상된 위 기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요구에 응하여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과다 지급 공사대금이 환수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신고자의 신고취하서 제출 : '05. 4. 11.) ※ 통보일자 : 2005. 5.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05호 (2003. 8. 18.) <input type="checkbox"/>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제2003-117호	구청 직원들의 공금 횡령(03AA0078)
------------	-------------------------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들로서, - 2002. 11.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들을 불법 광고물 제거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공 근로사업에 사역시키고, 동 근로 부분에 대하여 근로대장 등 관계 서류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공공 근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다음, 그 시경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일부 공공 근로 사실은 인정되나, 동 근로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03. 12.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18호	근로감독관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	--------------------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인 바, - 1999. 7.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노동부 산하 유관단체의 업무 관계자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0여회에 걸쳐 합계금 약 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 유관단체의 불법행위와 탈세 등 비리를 묵인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신고자 등 관계인의 진술 거부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고, 유관단체의 비리에 대하여는 이미 노동부 자체 감사 절차 종료됨) ※ 통보일자 : 2003. 1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 2000. 9.경 식품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동 회사의 관계자로부터 선처를 부탁받고 수회의 틈새를 향응 등과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일부 목격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및 회사대표 불구속 송치(뇌물수수, 뇌물 공여 혐의) ※ 통보일자 : 2004. 3.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1. 6.경 관내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던 건설업자가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인 '진입로,교량 확장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자, 공매처분을 통하여 동 사업을 승계한 특정 건설업체가 위 조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을 잘 알면서도, 동 건설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조건 공사를 국가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보고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금 13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공문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및 공모자 등 3명 구속, 피신고자 1명 불구속 - 국고손실분 회수방안은 해당 지자체와 건설업체간 협의중 ※ 통보일자 : 2004. 4.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세무서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 2002. 12.경 관내 건설업체의 가공 매입 자료 관련 세무조사에 있어, 고등학교 동창생인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세금 추징이 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풀프체 셋트 1개와 수회에 걸쳐 합계금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세무조사 서류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 불구속 기소(세무사법 위반, 금품수수는 무혐의 처분, 세무사 자격중 대여자는 구약식 처분) - 해당업체 사장 구속 기소.간부 1명 불구속 기소 - 해당업체 탈세액 4억 7백만원 추징 ※ 통보일자 : 2004. 2.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가로부터 혈액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혈액원 관계자들로서, - 1998. 2.경부터 2003. 7.경까지 사이에, 관련법상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혈액 관리 업무에 중사하면서, 혈액중 각종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고도 폐기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약사 등에 대가를 교부받고 의약품 제조 원료를 공급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혈액 관리 및 공급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 혈액검사 방법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강구 조치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 통보일자 : 2004. 3.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의 임직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2년경 특정 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해 주고 그 준공상태를 확인함에 있어, 실제로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준대로 준공된 것인 양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과다한 공사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제출 서류를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시공상태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된 부분은 설계기준에 맞게 재시공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처분 요구 ※ 통보일자 : 2004. 5.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의안 제2004-62호 『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 보고서 작성관련 비리 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04.5.17) 기각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 2001. 8.경 주취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후 폭력행위를 행사한 피의 사건을 담당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사건의 선처를 부탁받고 상품권 40만원 상당과 현금 80만원 등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위 금품 전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위와 같은 내용의 피의사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입건유예 (혐의사실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하므로 입건을 유예하고, 소속기관에 대하여 징계 통보) ※ 통보일자 : 2003. 1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관으로서 파출소장직에 근무하면서, - 2001. 3.경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창고용 건물을 매수한 후, 부근 하천과 논을 불법 매립하여 숙박, 식당 및 노래방 시설과 주차장을 건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리행위를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불법 영리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인 입건 후 벌금(구약식) 300만원 처분(건축법 및 하천법 위반) ※ 통보일자 : 2004. 4.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으로서, - 2002. 2.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소속 기관 후원의 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기업체로부터 물품 약 250여만원 상당 및 현금 500만원 등 액수 미상의 금품을 불법으로 후원받는 불법행위를 하고, - 위와 같은 기간내에 매월의 업무활동비를 사적인 개인 용도로 전용하고, 해외출장비를 가족 모임에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일부 후원금 모집 사실 등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혐의 전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기관주의 촉구 - 특수활동비 용도 불명 사용은 수사자료 통보(대검찰청, 출장관련 사항은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4. 3.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공무원들로서 계약품의 안전성 검사 등을 담당해 오면서, - 2003. 7.경 공적인 목적의 해외출장에 있어, 계약협회 간부들로부터 출장 경비는 물론 술자리 향응과 골프 접대 등을 제공받고, - 계약협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에 의무 강사로 출강하여 강사로 명목으로 약 30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지급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해외출장시 민간인과 동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혐의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를 통해 피신고자 불구속 송치(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 통보일자 : 2004. 4.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국유지 임야의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바, - 2001. 4.경 국유지 임야의 특례매각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특례 매각 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 임야 시가 1,200여만원 상당을 관련 지침 내용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매각 대상지로 확정된 다음, 매각 이전의 당해 임야에 관한 불법행위의 관련자로서 특례 매각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특정인에게 이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임야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특례 매각 특례 주장에 대한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지침 불법 변경 경우 등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신고자의 신고취하서 제출) * 통보일자 : 2005. 3.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추후 감사결과 내용 정구)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75호 (2003. 12. 15.) <input type="checkbox"/> 국유지 불법 매각 부패행위□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공립 공업고등학교 계약 담당 공무원인 바, - 2003. 7.경 위 고등학교 소유 불용물품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중, 1순위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낙찰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2순위 낙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1순위 낙찰자와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동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후 1순위 낙찰자의 계약 미이행 등으로 낙찰이 무효화하자 새로운 입찰 과정에서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당초 입찰의 2순위 낙찰자와의 차액 상당인 금 6,000여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입찰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국가 예산 낭비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p>		
<p>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p>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비위 혐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요구 * 통보일자 : 2003. 12.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하천 공사 관련 블록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 2002. 11.경 기존 납품 계약체결자인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보장해 주기 위하여, 사실상 특정 업체와의 계약만이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와 고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1억 7천여만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조달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예산 낭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위법, 부당성 없음) * 통보일자 : '05. 2. 2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36호	전국태권도대회 지원예산 횡령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위조사건에 대한 제조사요구
------------	--

제41차 전원회의(2003. 10. 11.)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제2003-93호 『전국태권도대회 유치 관련 지원금 횡령,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위조』 신고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제조사 요구 여부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진술을 번복한 참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피신고자의 변명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자료로 채택한 점에서 사실관계 조사에 미진한 점이 있고, 횡령 혐의 이외에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에 제조사 요구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당초 조사결과 유지 (50만원 미만 소액 보조금의 세부 사용내역상의 차이 이외 횡령 및 배임 혐의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11.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교	- 관련 의안 : 제2003-93호 (2003. 7. 21.) 『전국태권도대회 유치 관련 지원금 횡령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위조』

제2003-137호	무보험차량 불법 영업 방지 등 직무유기
------------	-----------------------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서 차량 등록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 1996. 9.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자신들과 유착된 특정 관광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회사 소유 무보험 차량 10여대가 영업을 계속중임을 잘 알면서도 변호관 영치, 등록 말소 및 고발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전혀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차량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신고자들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무보험 차량을 운행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공무원 3명을 징계조치토록 통보 (‘차량 직권 말소 방법 및 여객자동차 등록기준’ 관련 제도개선과제 3건을 발굴하여 해당부처에 조치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03. 12.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교	

제2003-13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I)
------------	---------------------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장으로서, - 200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있어, 물리치료사 고용 인원을 위장하여 실제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마치 진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는 방법으로 약 2,100여만원의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여 공적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요양 급여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업무정지(75일) 처분 조치 - 부당이익금(11,400,859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04. 8.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교	- 관련 의안 : 제2003-58호 (2003. 5. 19.)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제2003-139호	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	-----------------------------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청 공무원들로서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각종 홍보물의 납품 계약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 2002. 2.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사이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 소요 수요량 보다 훨씬 과다한 수량의 납품 계약을 체결해 주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대가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월드컵 홍보물 계약서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뇌물 수수 공무원 1명 구속 기소, 공여자 1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3. 11.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 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교	

제2003-140호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제조사요구
------------	----------------------------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94호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제조사 요구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원 사건 조사기관인 감사원은 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신고자 주장 내용의 위장 고용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유기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위원회의 추가 확인 결과 위장 고용 사실을 인정하는 참고인의 진술 등이 확보되므로 관련 서류와 함께 재조사를 요구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제조사요구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관련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13개월) 조치 - 관련 업체 대표 및 그의 관련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를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공기업 관계직원은 제조사 요구 이전에 징계 조치) ※ 통보일자 : 2004. 1.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3-94호 (2003. 7. 21.) <input type="checkbox"/> 공기업직원들의 직무유기 제2002-57호 (2002. 5. 20.) <input type="checkbox"/> 공기업 지사장 입찰 비리

제2003-141호	공공 재단법인의 고용 보험료 징수 비리
------------	-----------------------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 재단법인인 바, - 1995. 7.경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매점 근로자들로부터 고용 보험료 명목으로 약 1억원을 징수하여 보관중, 관련법 적용 문제로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치 아니한 채 일부 금원을 전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고용보험료 환급처리 태만 등 업무과실이 인정되어 견책 1명, 경고 1명 등 징계조치(고용보험료 착복 및 업무상 횡령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 통보일자 : 2004. 1.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42호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	----------------------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 교원단체 간부들로서, 공모하여, -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실제로 제출된 연구 논문 보다 무려 200여편 이상을 심사한 것인 양 관계 서류 내용을 위조하여 행사후, 등 심사분에 대한 심사비 액수 미상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지방 언론의 본건 관련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미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 3명을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죄로 각 불구속 구공판 ※ 통보일자 : 2003. 11.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 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48호	구청공무원의 예산 부당집행
------------	----------------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공보 관련 업무 담당자인 바, - 2002. 7.경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 소식지 인쇄 용역 업무를 발주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하여 고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금원을 지급해 줌으로써 액수 미상의 공공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종 계약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고가로 수의계약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피신고자 징계 요구(중징계 1명, 징계 1명) ※ 통보일자 : 2004. 7.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49호	공무원의 관용차량 부당 사용 부패행위
------------	----------------------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으로서, - 2003. 1.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사이에, 소속 기관의 관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연료 전표를 부당 수령한 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 통보일자 : 2003. 11.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 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50호	무기 개발 사업 관련 예산 낭비 부패행위
------------	------------------------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무기 개발 관련 방산업체와 국방부 소속 계약 및 감사 담당 공무원들인 바, 공모하여, - 2002년경 특정 무기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 방산업체와 미국 업체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미국 업체에게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보상의무를 국내 방산업체가 부담하게 되자, 국내 방산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서류를 제출, 보고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가 위 보상의무를 부담하여 주고 국내 방산업체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하고, - 위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할 의의가 있는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사실의 인지에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각종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관련 공무원 9명 징계 요구(중징계 6명 등) - 부당한 사업비용을 인정한 계약의 수정계약 체결 시정요구 -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부과 조치 - 공무원, 업체대표 등 8명 형사고발(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관련 서류조작 세금면탈) ※ 통보일자 : 2004. 6.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조치)
5. 비고	

제2003-151호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업체선정 관련 비리
------------	------------------------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인 바, - 2002년도 국가기관이 개발한 금융전산망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특정 영리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전산망보안시스템관리 세부지침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시험이나 승인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영리업체에게 보안 장비 제작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공문을 기안하여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특정 영리업체의 보안 장비를 구입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공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주의 촉구 - 관련 세부지침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토록 요구 ※ 통보일자 : 2004. 5.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52호	공립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비 부당집행
------------	------------------------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립 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로서, 공모하여, - 2002년경 관련 교육청의 지침을 위배하여, 학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한 특기,적성교육비를 일부만 정상적 회계처리에 의하여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이 금지된 교장 등에 대한 관리수당과 교사들에 대한 추가 수당의 명목으로 부당 집행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회계서류 및 지침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등종 교육비 집행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기관경고 조치(대부분 사립으로 문체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당시 교장이 퇴직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 ※ 통보일자 : 2004. 3.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53호	군사법원 재판 관련 항응 수수 비리
------------	---------------------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사법원 관계자로서, - 2002. 12.경부터 2003. 2.경까지 사이에 심리중인 사건의 변호사들 4명으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룸싸롱 향응 등 시가 합계금 수천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동종 언론 보도 기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수사절차가 국방부 검찰단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하여 병합수사가 가능하도록 이첩함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통보일자 : 2006. 8.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54호	농업경영개선자금 부당 대출 및 정부양곡 부실관리 비리
------------	-------------------------------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단위 농협 전·현직 조합장과 직원들인 바, 공모하여, -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농업인 채무자의 부채 경감을 위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자격자들에게 합계금 약 9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불법대출 하여 주고 그 회수를 불가능케 함으로써 동역 상당의 공적 기금의 부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위와 같은 기간내에 정부 양곡을 보관, 관리해 오면서 실무자들의 부실 관리 등의 비리행위를 묵인, 방치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법대출 및 갈취혐의로 전 조합장 구속 - 공문서변조등을 통해 친인척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전·현직 직원 5명 기소(구속 3명, 불구속 2명) - 보관중인 양곡을 빼돌려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4. 7.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58호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사건 제조사 요구
------------	-----------------------------

제44차 전원회의(2003. 11. 2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110호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사건에 관한 교육 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조사 요구 여부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며, 교수 임용시 학과장 배제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과 현재 임용된 교수의 허위 서류 작성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주장내용과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제조사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제조사 요구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7명 임중경고 조치(전공적부 관련사항은 판단곤란, 해당 대학의 관련 규정은 기 개정) ※ 통보일자 : 2004. 3.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59호	신병 부대 분류 관련 병무비리
------------	------------------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부대 장교로서 전입 신병의 부대분류 전산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 2001. 1.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상급자 또는 동료 부대원 등을 통하여 청탁을 받은 전입 신병의 부대 분류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청탁 내용대로 신병을 분류 배치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안의 성격상 군 내부 보다는 외부기관의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피신고자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 인사청탁 관련자 20여명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의뢰 ※ 통보일자 : 2004. 5.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60호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학회 경비 부당 수수
------------	------------------------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서 대학 부설 병원 과장인 바, - 2003. 9.경 자신의 전공 관련 국제 학회를 유치하여 개최함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19개 제약회사들로부터 학회 경비 약 1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초청된 의국인들의 체류 경비 약 1억원을 3개 제약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기부금 관련 서류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부당 금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등록금 및 협찬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04. 8.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6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II)
------------	----------------------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장으로서, - 2001. 1.경부터 2002. 3.경까지 사이에, 실체는 고용한 사실이 없는 물리치료사 2명의 고용을 위장한 후 동인들이 환자를 치료한 것인 양 허위 기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8,600여만원 상당의 공적 기금을 편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해당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예정 - 부당금액(134,989,220원)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04. 8.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8호 (2003. 5. 19.) <input type="checkbox"/>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제2003-162호	공무원의 조달 물품 하자 교체 관련 비리
------------	------------------------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 물품의 계약 및 검수 담당 공무원인 바, - 1998. 8.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특정 납품업체의 하자 있는 부품 납품을 묵인하여 주었다가, 이후 하자 부품을 교체받음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 보수되지 않은 불량품을 납품 받는 등 관련 부품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국가 예산 1억 1,9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견적서 등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교체 부품에 주요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혐의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에 조사가 필요함 ※ 토의사항 : 기허 처리된 신고 사건과 관련된 재신고의 처리 방법 기허 처리된 신고 사건과 관련한 재신고 사건의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있어 기허 처리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적시되거나 주요한 증거 자료가 새로이 현출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개의 신고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4. 7.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3-21호 (2003. 3. 3.)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납품 검수 관련 비리□	

제2003-163호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	-------------------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보육원 원장 및 임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2. 12.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290만원, 화단 조성 나무 구입비 250만원, 동계수련회비 90만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전용하고 허위의 간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 놓는 방법으로 횡령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간이 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주부식비 및 운영비 횡령등이 확인되어 행정조치 8건, 변상 및 회수 6,550천원, 관리자 징계조치 요구(징계 2명, 경고 1명) ※ 통보일자 : 2004. 2.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64호	경매조작사건 수사 및 증거물 감정 비리
------------	-----------------------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조작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경찰관 및 감정 담당 공무원들인 바, - 위 경찰관은, 2000. 7.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조작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고의적인 축소 수사로써 주된 혐의자인 증도매인들의 범행을 은폐하여 형사 입건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참고인에 대하여 무고로 구속한다고 집을 주는 등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고, - 위 감정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건과 관련한 녹음 테이프의 감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로는 조작된 녹음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현장에서 핸드폰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감정을 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은 인정되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동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조치(구체적 혐의를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04. 4.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65호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사건의 제조사요구
------------	---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신고심사국장
1. 의안개요 ○ 제2003-81호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조사요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함	
2. 의결이유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형식승인 없는 제품이 설치된 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및 비위 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에 대하여 제조사 요구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위법, 부당성 없음) ※ 통보일자 : 2004. 1. 9. <위원회 검토의견> - 제조사 요구결과에 대한 제조사 요구 근거가 없으므로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81호 (2003. 7. 7.)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제2003-171호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이의신청
------------	-------------------------------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80호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사건의 신고자가 경찰청의 내사종결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를 신청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위 사건 수사과정에 대하여 대질조사도 없이 피신고자측에 유리한 참고인들 진술만으로 내사종결 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는 바, 일부 수사 미진의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에 대하여 제조사를 요구함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교사 1명 불구속 기소 송치 ※ 통보일자 : 2004. 4.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80호 (2003. 7. 7.) <input type="checkbox"/>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제2003-173호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의 면세유 부정사용 등
------------	------------------------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들 및 등 허가 관련 시정 공무원들인 바, -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은, 2001. 7.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허가상의 어업용 선박을 전혀 가동하지 아니하고 식당과 료싸롱 영업에 종사하면서 마치 어업용 선박에 사용하는 것인 양 기망후, 국가로부터 면세유 약 4만 리터 시가 3,800여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공급받고, - 시정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기간내에 위 내수면 어업허가자 등으로부터 선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부당 허가와 면세유 수령 등의 불법을 묵인해주고, 동인들로부터 액수미상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어업허가증 사본 등의 관계서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나,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감동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강원도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4. 4.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124호 (2003. 9. 22.)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권고안

제2003-174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횡령 부패행위
------------	------------------------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전·현직 단체장들인 바, -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위 단체의 시책 업무추진비 약 9억 7,000만원 상당을 집행함에 있어, 소속 서무계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중 상당한 금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거액의 예산을 횡령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지출결의서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개인적 횡령 등 혐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4. 5.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예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행사부에 감사 자료로 활용토록 송부)
5. 비고		

제2003-175호	국유지 불법매각 부패행위
------------	---------------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림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인 바, - 2001. 3.경 특정 군에서 불법 매각되었다가 환수 소송을 통하여 국유로 환원하게 된 3필지에 대하여 그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등기 명의자로부터 국가가 증여받아 이를 다시 특정인에게 특례매각해 줌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약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 2003. 3.경 관련 재정경제부 지침 등에 위배하여 특정인에게 국유지 2필지 시가 합계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특례매각하여 주어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3. 7.경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매각 승인도 되지 아니한 국유림 22필지 시가 합계금 1억 7,000만원 상당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특례매각하여 주어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국유지 관리와 매각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신고자의 신고취하서 제출) * 통보일자 : '05. 3.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추후 감사결과 내용 정구)
5. 비고	- 관련의안 : 제2003-131호 (2003. 10. 6.) □ 국유지 임야의 특례 매각 관련 부패행위□	

제2003-176호	공립학교 교사들의 부당 금품수수
------------	-------------------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립고등학교 교사들로서, - 2002년경부터 2003. 7.경까지 사이에 학부모회로부터 야간학습 지원 등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금품을 부당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모금액 지출명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주의 조치 - 당해 학교 기관경고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04. 3.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003-184호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 예산낭비
------------	-------------------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인 바, 각종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집행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 2001. 1.경 특정 방위력 개선 사업의 원가 감사를 통하여 특정 방산 업체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환수처분하고 이를 완납받은 이후, 2003. 2.경 등 업체로부터 금원 환불의 선처 청탁을 받고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후 위 금원중 약 15억원 상당을 등 업체에게 환불해 주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1. 2.경 특정 방산업체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착수금 및 중도금 부분에 대한 약 30억원 상당의 위약금이 추정되게 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등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산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등 추징금을 부당 면제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1. 6.경 특정 방산업체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부당원가 계산 부분 약 250억원 상당의 추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등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감사 및 추정 절차를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관련 자료들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낭비 부분은 감사원의 조사가, 특정 업체들의 로비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고		



2002年度 申告事件 追録



2002년도 심의 . 의결례집 (1집) 처리결과 추록 일람표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 내용	1정 면수
1	제2002-55호	고속도로 공사 관련 도선폐업보상 등 비리	위원회 검토의견	45
2	제2002-66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위원회 검토의견, 비고	51
3	제2002-75호	경찰공무원의 업무유착 부패행위	위원회 검토의견	54
4	제2002-76호	국책 연구과제 연구비 비리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55
5	제2002-108호	공립중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	70
6	제2002-109호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	71
7	제2002-114호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	"	73
8	제2002-119호	장비 고가정비 의혹(I)	"	74
9	제2002-120호	장비 고가정비 의혹(II)	"	75
10	제2002-121호	장비 고가정비 의혹(III)	"	76
11	제2002-122호	장비 구매관련 예산낭비(I)	"	77
12	제2002-123호	장비 구매관련 예산낭비(II)	"	78
13	제2002-125호	군청 등의 예산낭비	"	80
14	제2002-127호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낭비	"	82
15	제2002-128호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위원회 검토의견, 비고	83
16	제2002-130호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 지연처리 비리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84
17	제2002-135호	국제공항 건설 관련 비리	"	86
18	제2002-140호	체육행사 찬조금 불법모금 및 인사비리	"	87
19	제2002-141호	시정 발주 관급공사 관련 예산낭비	"	88
20	제2002-142호	농협직원 금품수수	"	89
21	제2002-145호	공립학교 체육교사의 대회 포상금 등 횡령	"	90
22	제2002-149호	부실담보물을 이용한 대출사기	"	91
23	제2002-150호	국립대학교 교수 중원을 위한 금품제공 비리	"	92
24	제2002-151호	군 복지회관 운영 . 관리비 등 사적용도 사 용	"	93

제5차 전원회의(2002. 5.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경찰공무원이고, 피신고자 B는 고속도로 건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담당자인 바, - 위 A는, 고속도로 및 대교 공사와 관련, 특정 도선업자들과 유착하여 동인들 소유의 부선, 부교를 도선운행 안전시설로 부당하게 지정하여 주고, 부적격한 도선사업면허를 남발함은 물론, 폐업 보상을 위하여 허위로 도선 입,출항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고, - 위 B는, 도선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에 있어, 적정 유선 보상이 아닌 고가의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도선 영업권을 과대계상 하는 등으로 도선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관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영업손실보상금 과다 감정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 통보 - 공기업 대표자에게 과다 지급된 보상금(295백만원) 환수통보조치 ※ 통보일자 : 2002. 12.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12차 전원회의(2002. 6.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장으로서, - 2000년도 관내 지역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와 유착하여 동 업체가 인원과 장비를 과다 계상하여 산출한 사업비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여 수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 그의 다른 청소대행 업체와의 동종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액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임금대장, 청소대행업체 도급계약서 기재내용 등이 신고자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조회 결과 특정 업체의 근로자로 등재된 일부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청소대행용역 원가계산업무 부당 처리하여 10억 1,5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요구 - 해당 시장에 대하여는 위 금원 회수 및 제도개선 조치 요구 ※ 통보일자 : 2003. 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43호 (2003. 10. 20.)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3차 전원회의(2002. 6. 1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검찰청 마약수사반원인 바, 관내에서 유흥주점, 오락실, 유타 업소를 순차로 운영해 온 특정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 '98. - '99. 3. 동 업주로부터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 줄 것을 부탁받고, 수회에 걸쳐 금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 '99. 5. 동 업주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과 10만원권 구두상품권 40장 등 합계 1,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 '99. 7. - 2000. 3. 동 업주로부터 유타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시로 성상남을 받음	
2. 의결이유 ○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나,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간접정황에 비추어 부패행위 개연성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피신고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신고자가 본건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지목하는 주요 참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신고자는 당초 진술에서의 공여 금품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신고자가 특정하는 계좌 추적 결과도 금품 수수 사실 미발견) ※ 통보일자 : 2002. 1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13차 전원회의(2002. 6. 17.)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공공 연구원 소속 특정 국책 연구과제 총괄 책임자로서, - 2000. 6.경 특정 국책 연구과제로 개발된 시제품에 용접 불량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본제품 생산을 강행하여 국가예산 약 230여억원을 낭비하였고, ○ 관련 감독기관은, 동 연구원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함</p>	
<p>2. 의결이유</p> <p>○ 관련 이메일과 우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시제품 하자에 대하여 관련 연구진에서 상당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던 점 엿보이므로 하자내용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 - 조사중 (신뢰성 있는 실험 측정 결과 확보에 장기간 조사기간 소요)</p> <p><위원회 검토의견></p>
5. 비고	

제17차 전원회의(2002. 9. 2.)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공립 중학교 교장으로서는, - 2001. - 2002.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사 수고비 명목으로 1,200만원, 시험채점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 등을 교부받고, - 교장실에서 특정학생에 대한 불법 과외, 학생회장 선거시 부당 개입 및 학생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각종 부패, 위법 행위를 자행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로부터 제출된 학부모들 사실확인서, 녹취록 및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투명하지 아니한 금품수수의 개연성 높으므로,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 - 교장 1명 경고, 교감 등 3명 주의(교제 구입 등 명목 금 1,400만원 모집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미입금 사용, 다만 개인 용도 전용은 없음) * 통보일자 : 2003. 1. 11.</p> <p><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17차 전원회의(2002. 9. 2.)	제2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건설교통부 및 구청 공무원들로서, - 2001. 7. 추상복합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 시공업체와 유착하여 다수의 부실시공 결과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사용승인을 해주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부실시공 결과통보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p>	
<p>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 - 종결 처리 (일부 부실 시공의 점은 인정되나 이미 사용승인 이전 시정조치 완료되었고, 기타 관련 공무원의 유착혐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3. 27.</p> <p><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경찰서 경리계장으로서, 각종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 '98. 4. - 2002. 8. 건설 공사업체와 유착하여, 허위 공사대금 지출 결의서 작성 등으로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 소속 직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장명령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주 이를 횡령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각종 지출결의서 사본 등 관계 서류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p>	
<p>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횡령금 환수 조치), 뇌물 수수 혐의는 공여자 소재불명으로 내사중지 - 동종 비리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로 경찰관 14명 입건하여 그중 8명을 구속 기소, 그 외 37명에 대하여 비리 통보 * 통보일자 : 2002. 12. 26.(1차), 2003. 3. 26.(2차) 2003. 8. 27.(3차)</p> <p><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7. - 2000. 특정 업체와의 사이에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정비지침의 제한 규정(신품 단가의 6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비계약 금지)에 위배하여, 1대당 2,200만원 ~ 3,600만원 상당의 정비비를 책정 지급함으로써 초과금액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5년간 정비계약중 4년간의 계약내용이 위 제한규정을 훨씬 초과하여 체결(정비가 신품 단가의 75-94퍼센트에 이룸)되는 등으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부적정 사항 개선통보(실제 정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정비계약하는 문제점 등)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7. 7. - '99. 7. 3차례에 걸쳐 특정회사와의 사이에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함에 있어, 정비물품 재고번호를 조작함으로써 허위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가액 산정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과다하게 고가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24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정비물품 재고번호 조작에 따른 허위 정비계약 체결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비가액 산정시 수입부품 가격 책정에 있어 재고 및 재생 물품 사용의 의심이 있음에도 모두 신품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정비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예산 낭비 의혹이 인정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 (실제 정비에 소요된 물품을 정비 원가에 포함시키는 등 예산 낭비 혐의 발견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7. 6. - 2000. 12. 2차례에 걸쳐 특정회사와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물품 재고번호를 조작함으로써 정비대금을 과다하게 계상 지급함으로써 약 42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정비물품 재고번호 조작에 따른 허위 정비계약 체결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비가액 산정시 수입부품 가격 책정에 있어 부품 모두를 신품(원 제작국인 미국에서 90년대 초 제작 중년)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정비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의 예산 낭비 의혹이 있음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 (실제 정비에 소요된 물품을 정비원가에 포함시키는 등 예산 낭비 혐의 발견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18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5. 7. 기존 조달 장비 2종은 사실상 대부분의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국산개발부품으로 조작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고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간 143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위 2개의 장비 모두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위 2개 장비의 부품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사실상 국산개발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 부품 단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로 구매된 점을 종합하면,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의혹이 있음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부적정 사항 개선 통보(본건 부품은 실제상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이므로 차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방산지정물품에서 제외할 것 등)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19차 전원회의(2002. 9.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 '95. - 2000. 수종의 장비를 조달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품 모두가 수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산개발부품으로 조작하여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고가에 납품하도록 하고 거액의 예산을 낭비함	
2. 의결이유 ○ 위 부품 모두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상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위 부품들의 주요 부분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고 국산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하여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지속적인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가격의 고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구매 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토의사항 : 신고사항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위법사항의 처리방법(“별지” 참조)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부적정 사항 개선 통보(본건 부품은 실제상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이므로 차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방산지정물품에서 제외할 것 등) ※ 통보일자 : 2003.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56호 (2003. 5. 19.) 『장비 고가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이의신청』

제19차 전원회의(2002. 10.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청 및 조달청 관계자들인 바, - '98. - 2002. 군청 관내 레미콘 납품, 조달과 관련하여, 특정 레미콘 업체 2개 회사와 유착하여 동 회사들이 자체 가격을 파다하게 계상.청구한 레미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 위 군청의 군수는, 같은 기간중 자신의 친동생에게 제반 시설 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특정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선처부탁과 함께 금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레미콘 자체대금 산정에 있어 실제 구입 절차와 달리 파다 계상된 점 확인되므로,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친동생에 대한 공사도급 및 뇌물수수 부분은 구체적 사실, 증거의 제시가 없어 불이첩)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조달청, 군청의 레미콘 납품 가격 파다 책정 인정됨 (파다 지급금 9,900여만원 등 회수, 조달청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 통보, 공무원 8명 주의 처분) ※ 통보일자 : 2003. 8.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78호 (2003. 12. 15.)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9차 전원회의(2002. 10.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장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인 바, - 2001. 11. 소정 정부출연 연구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8억 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으나 연구실적 평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특정 회사에 대하여, 기금회수 절차를 망기한 채 오히려 추가 기금을 지원하여 2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 정보통신부 공무원은, 위 부패행위와 관련된 진정서를 청와대를 통하여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아니한 채 진정서 사본을 위 연구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정인의 신원과 진정내용을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제출 서류와 관련 뇌물수수 사건의 범죄사실 등을 종합 하면,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진정 내용 누설 책임에 대한 감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기관주의 조치 (연구과제 평가 업무 소홀 책임 인정되나, 정부출연금의 환수 조치가 진행중이고 당시 연구원장이 이미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함) ※ 통보일자 : 2003. 9.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48호 (2003. 4. 21.) 『신분보장조치 요구 조사기간 연장』

제20차 전원회의(2002. 11.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 2002. 2. 특정 2개 업체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2장이 거래 관계 없이 작성된 허위 서류임을 잘 알면서도, 동 업체들과 유착하여 약 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해당 세금계산서 2장은 부동산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진성으로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부과, 위 세금계산서상의 취득 가액 보다 훨씬 과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진 것이 확인되므로, 세금 신고.납입 과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서울특별시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지방세 3억 2,800만원 포탈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고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 요구(포탈세액 추징) ※ 통보일자 : 2003. 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관련 의안 : 제2003-15호 (2003. 2. 17.)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사건 이의신청』

제19차 전원회의(2002.10.7.)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는,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로서, - 2002. 7. 관내 특정 업체의 거액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2건의 제보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세부조사를 방기한 채 관련 제보내용을 동 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각종 정부와 증빙서류를 폐기 또는 조작하도록 하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가 제출하는 탈세제보서 및 첨부 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매출 누락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금품수수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국세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p> <p>- 탈세업체에 대하여 약 44억원 추정 (관련 세무공무원의 고의 지연 및 정보 유출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6. 23.</p>
	<p><위원회 검토의견></p> <p>-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고의 지연 부분 설명 요구 필)</p>
5. 비고	

제20차 전원회의(2002. 11. 4.)	제3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국제공항 건설 책임자 및 감독 공무원들로서, - 국제공항내 여객터미널 공사에 있어, 불량한 방수, 내화 등 자재를 사용하고 각종 기초공사 부분을 설계내용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하여 거액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이에 유착하여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가 이미 동일 내용을 검찰, 감사원에 진정하였으나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각종 공사서류 등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차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동일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에 조사절차가 계류중에 있음이 확인됨</p>	
<p>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p> <p>- 종결처리 (자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46개 사항의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됨) ※ 통보일자 : 2003. 1. 10.</p>
	<p><위원회 검토의견></p> <p>-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5. 비고	

제21차 전원회의(2002. 11. 18.)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지역 본부 세관 공무원들로서, - 2002년 채움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산하 단위 세관을 상대로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씩의 금품을 강제로 모금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 2002년 사무관 승진 심사와 관련,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다면평가위원 명단 등의 비밀을 누설하고, 취합된 자료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객관적인 자료 제출은 미흡하나, 신고 내용의 구성성에 비추어 상급 감독관청의 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됨</p>	
<p>3. 의결결과 : 관세청으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p> <p>- 공무원 2명 경고 (산하세관에 대한 금원 강제 지원 및 운영비 전용 등, 다만 인사비리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2003. 1. 30.</p>
	<p><위원회 검토의견></p> <p>-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p>
<p>5. 비고</p> <p>- 관련 의안 : 제2003-170호 (2003. 12. 15.) 「신분보장조치 요구」</p>	

제21차 전원회의(2002. 11. 18.)	제1분과위원회
<p>1. 의안개요</p> <p>○ 피신고자들은, 시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 '99. - 2001.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와 관련, 동 공사를 시공하는 특정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공정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주고, 지급이 금지된 수해 복구비를 지급하여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 2002. 하천 정비 공사와 관련, 위 특정 건설 업체에게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해 주기 위하여 기술사찰 평가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p>	
<p>2. 의결이유</p> <p>○ 신고자가 제출하는 각종 공사계약서, 감리 및 보험관계 서류를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동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상급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금품수수 증거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p>	
<p>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p>	
4. 처리 결과	<p><조사기관></p> <p>- 공사비 1억 6,700만원 과다 계상 확인, 수해복구 지원 액중 보험금 수령 부분 반납 토록 조치(현재 진행중 공사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수의계약 관련 유착, 묵인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계 공무원 징계 조치 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1. 7.</p>
	<p><위원회 검토의견></p> <p>-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관계 공무원 징계 조치 여부 설명 요구 필)</p>
5. 비고	

제21차 전원회의(2002. 11.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협 채권 관리 및 회수 담당자들인 바, - 2000. 11. - 2001. 10. 농협 채권 관리, 회수와 관련한 법원 신청사건의 대행과 관련하여, 특정 범무사에게 독점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7회에 걸쳐 합계금 210만원을 교부받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동일 내용에 대한 진정을 기초로 자체 감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됨에도 경고 등의 경미한 처분에 그쳤음이 확인되고,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농협이 부담해야 할 각종 신청 사건 인지대, 송달비 등 약 3,000만원을 특정 범무사에게 대납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알선수제 등죄로 피신고자들 2명을 각 불구속 입건 ※ 통보일자: 2003. 1.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2차 전원회의(2002. 12.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각 공립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바, - 도 농구협회 이사로 각 겸직시, 공모하여, '99. - 2001. 한국프로농구연맹의 지원금, 산하 농구팀의 전국체전 포상금, 상급 체육회로부터 수령한 전국체전 훈련비 등 수천만원을 보관중 개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하고, - 같은 기간중 고등학교 농구부에 대한 우승 포상금, 장학금 합계 2,150만원 및 중학교 농구부에 대한 장학금 200만원을 각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하는 각 입금 확인서, 송금 내역서, 농구협회 결산서 및 참고인 작성 사실 확인서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일부 금원을 관계서류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수령하였음에도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지급치 아니한 혐의가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을 횡령죄로 불구속 입건, 나머지 혐의 부분은 각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3. 4.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3차 전원회의(2002. 12. 1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제조업체 대표이사로서, - '99. 7.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는 기계류 19점이 고물에 가까운 노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제작 서류의 제작 연도, 업체를 조작하여 신품으로 위장한 다음, 공공기관의 대출보증하에 총 2억 3천만원을 대출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함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하는 감정평가서, 참고인들 사실확인서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기계의 제작 연도 위조 등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피신고자의 대출 사기, 그와 관련된 부실 감정평가 및 대출 심사 관계자의 공범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포함한 권취 사범 3명을 각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3. 2. 2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3차 전원회의(2002. 12.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교수인 바, 전국 국립대학교 특정 학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 '99. 3. - 2001. 해당 학과 교수 증원을 위한 토비자금 명목으로 전국 국립대 해당학과로부터 300만원씩 합계금 2,000여만원을 제공받고, 관계 부처에 동 금액을 교부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예금계좌에 2,400만원이 입금된 사실과 2001. 11. 국립대 특정학과 교수 45명의 정원이 배정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나,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 교수 증원의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 (8개 대학으로부터 총 2,400만원을 각출하여 공동현안 관련 정책 심포지움 개최 등 정상 경비로 지출) ※ 통보일자 : 2003. 10.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제23차 전원회의(2002. 12.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 2002. 부대가 운영하는 복지회관 수익금중, 부대지원금을 제외한 수익금 발생시 그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휘비' 명목의 공적인 용도로만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1,000여만원 이상의 '지휘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내부고발자인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 내용에 신빙성 인정되고,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는 하나 신고자가 편파적인 수사로 오히려 불이익 처분을 당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감사원의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 결과	<조사기관> - 자체 감사로 '견책' 처분 (670여만원 전용사실은 인정되나 개인 횡령 혐의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추가 징계조치 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3. 6.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II. 申告者 保護補償



제2003-6호	신분보장 조치 요구(I)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3분과위원회위원장
1. 의안개요 ○ 제2002-90호 『소방공무원 부당채용 등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징계)을 이유로 부패방지법 제30조 소정의 신분보장 조치, 인사교류를 요구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함 ※ 2003. 2. 3. 의안 최초 상정, 상세 검토를 위하여 처리기간 연장 결정	
2. 심의내용 ○ 징계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교류 요구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통하여 원상회복 대상인 징계처분이 이미 취소된 점과 신고자의 직무 특성상 관련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구를 인용할 수 없음 ○ 다만, 위 징계처분으로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상세 조사후 별도 의안으로 판단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 및 인사교류 요구 각 기각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90호 (2002. 7. 15.) 『소방공무원 부당채용 등 비리』 제2003-55호 (2003. 5. 19.) 『신분상 불이익 처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2003-22호	신분보장 조치 요구(II)
-----------	----------------

제27차 전원회의(2003.3.3)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1. 의안개요 ○ 제2002-98호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전보)을 이유로 그 처분의 원상회복을 바라는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함 ※ 2003. 2. 17. 의안 최초 상정, 상세 검토를 위하여 처리기간 연장 결정	
2. 심의내용 ○ 신고자와 관계인의 진술내용 및 전보 인사 관련 각종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통상의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본건 전보인사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요구(신분보장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98호(2002. 8. 19.)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 제2003-47호(2003. 4. 21.)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2003-47호	신분상 불이익 처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I)
-----------	---------------------------

제30차 전원회의(2003.4.21)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1. 의안개요 ○ 제2002-98호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53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원회 제 2003-22호 원상회복 조치 요구에 불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함	
3. 의결결과 :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98호(2002. 8. 19.)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 제2003-22호(2003. 3. 3.) 『신분보장 조치 요구』

제2003-48호	신분보장 조치 요구(III)
-----------	-----------------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3분과위원회위원장
1. 의안개요 ○ 제2002-127호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낭비』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므로 그 인용여부를 판단함 ※ 2003. 4. 21. 최초 의안 상정, 상세 검토를 위하여 처리기간 연장 결정	
2. 심의내용 ○ 신고자에 대한 징계와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을 통하여 신분보장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등을 고려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각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127호(2002. 10. 7.) 『정보통신 관계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낭비』

제2003-55호	신분상 불이익 처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II)
-----------	----------------------------

제31차 전원회의(2003.5.19.)	제3분과위원회위원장
1. 의안개요 ○ 제2002-90호 『소방공무원 부당채용 등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53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원인으로 부당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 취소를 받은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자에 대하여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함	
3. 의결결과 : 불이익 처분자에게 과태료 350만원 부과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90호(2002. 7. 15.) 『소방공무원 부당채용 등 비리』 제2003-6호(2003. 4. 21.) 『신분보장 조치 요구』

제2003-143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제42차 전원회의(2003.10.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2-66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과 비용의 절감 등의 결과를 가져 온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38조 소정의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통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청소대행 사업비 전액이 환수되는 등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이루어진 점 명백하므로,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소정의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의결결과 : 금 63,75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66호 (2002. 6. 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사업비 낭비』

제2003-170호	신분보장 조치 요구(IV)
------------	----------------

제46차 전원회의(2003.12.15)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1. 의안개요 ○ 제2002-140호 『체육행사 찬조금 불법모금 및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승진 심사 탈락)의 철회 및 승진 조치 등을 요구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2. 심의내용 ○ 관계자들의 진술내용과 인사 관련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패행위 신고와 신고자 주장의 신분상 불이익처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기각함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140호 (2002. 11. 18) 『체육행사 찬조금 불법모금 및 인사비리』

제2003-177호	구의회 의장의 직위 이용 납품 및 탈세 비리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제46차 전원회의(2003.12.1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2-54호 『구의회 의장의 직위 이용 납품 및 탈세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2. 심의내용 ○ 위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포탈세액의 추징은 관계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된 사항으로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금 지급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3. 의결결과 :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66호 (2002. 5. 20.) 『구의회 의장의 직위 이용 납품 및 탈세비리』

제2003-178호	군청 등의 예산낭비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제46차 전원회의(2003.12.1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2-125호 『군청 등의 예산낭비』 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과 비용의 절감 등의 결과를 가져 온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38조 소정의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통하여 과다 지급된 레미콘 대금 등 공사비가 환수되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소정의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의결결과 : 금 9,993,000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2-125호 (2002. 10. 7.) 『군청 등의 예산낭비』



III. 制度改善



제2003-39호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제29차 전원회의 (2003.4.7)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정부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어선을 감척시키는 조건으로 선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기 수혜자인 일부 선주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기액의 지원금을 챙기고 어선은 제3자 명의로 재인수, 사용(이른바 타인지배)하는 비리 사례가 발견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함			
2. 심의내용			
○ 「국제규제에따른어업인집행지침」 등 관계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감척어선 공개경쟁매각의 투명성을 높이고, 타인지배 등의 위법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정보활용체계 구축하여 수시 실태조사 및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감척어선 매각시 기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체계 구축			
▷ 감척어선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입찰제한 사항 명시 등 입찰조건 강화			
▷ 타인 지배 발견시 감척어선 매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 강구			
▷ 감척사업자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 실시			
* 별첨 :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 결과 : 해양수산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대로 조치(2003. 6월말)		
5. 비 고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해양수산부	권고 번호	제도03-2-1
----------	-------	----------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인한 감척대상 어선 할당량에 따라 정부가 선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매입한 후 선령 10년 이하의 감척어선에 대하여는 어선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으나

수익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감척시킨 일부 선주들이 제3자 (친인척 등) 명의로 경매에 나온 감척어선을 헐 값에 재인수하여 거액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감척어선 매각시 기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활용체계 구축, 타인지배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 타인지배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부패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1. 감척어선사업 기 수혜자에 대한 정보활용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및 각 시.도에서 감척어선사업 기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의 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하고, 관련 시.도에서 자료 요청시 수시 제공
- ※ 『국제규제에따른어업인집행지침』 보완

2.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입찰조건 강화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 입찰조건으로 타인지배가 적발될시 어업허가 취소, 당해 어선 매각계약을 취소하고 재매각 할 수 있는 조항 명시 등
- ※ 『국제규제에따른어업인집행지침』 보완

3. 타인지배의 경우 어선매입자는 어업허가 취소

- 경고조치 없이 감척어선 매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정』 별표 개정

4.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 강구

- 수산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를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개인)에 대한 포상규정 명시 및 홍보
- ※ 『수산자원보호등수산시책에관한포상규정』 개정

5. 감척사업자에 대하여 수시 실태점검 실시

- 어선등록대상 및 실제 조업현황 등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타인지배 적발 강화
- ※ 『국제규제에따른어업인집행지침』 보완

제2003-58호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	-----------------------------

제31차 전원회의(2003.5.19)	정책기획실
----------------------	-------

1. 의안개요

○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들이 환자수 및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 하는 비리 사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 급여청구 심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종 비리 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비리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 권고함

2. 심의내용

○ 요양급여 부정청구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예산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므로, 부정청구 보상 및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하여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함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정 청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실시
- ▷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
- ▷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서 발급 의무 강화(발급 기피자 벌칙 조항 신설)
- ※ 별첨 :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 권고

4. 권고결과

조치 중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138, 161호 (2003. 10. 20., 12.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 (I, II)』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방안

해당 기관	보건복지부, 노동부	권고 번호	제도03-1-1
----------	------------	----------	----------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들이 환자수 및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 청구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건전한 보험재정의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허위.부정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서는 급여청구의 심사, 수진자 조회, 현지조사 등 다양한 부정청구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은밀성.치밀성 등으로 부정청구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으로서 내부공익신고 등 통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함.

1. 부패방지법상 공익신고 및 보상금제도를 통한 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실시
 - 부패행위 신고처리 : 위원회에서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이첩
 - 신고자 보호 : 부패방지법상 신분보장 절차 적용
 - 신고자 보상 :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배너광고 홍보 및 각 의료기관에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신고.보호.보상제도 안내사항 공시

※ 다만, 부패방지법상 공익신고 및 보상금제도 적용에도 불구하고, 부정 청구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도입

2.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

수진자가 요양급여 부정청구 신고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내역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자 : 수진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피부양자)
- 신고 대상 : 허위.부정청구 행위
 - ※ 내부공익신고와 수진자에 의한 신고 등 견제장치 도입
- 지급기준
 - 환수금 1만원 미만 : 3천원
 - 환수금 1만원 이상 : 환수결정금액의 30% 지급
 - ※ 환수금 상한선 : 현행규정 30만원 한도금액을 폐지
- 지급시기
 - 공단이 환수금으로 확정할 때 또는 환수금 확정 전이라도 공단이 환수금으로 확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급방법 및 자료제출 요청 등

3.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계산서.영수증)발급 의무 강화

○ 진료내역 공개로 국민의 공익신고 참여 확대
 - 정보력이 부족한 수진자에게 공익신고의 원천자료 제공
 - 시민 참여를 통한 제도 활성화로 부정청구 방지 기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 기피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 발급 기피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상 진료내역을 공개토록하고 있으나, 계산서.진료세부내역서 미발행시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상당수 의료기관이 발행 기피

※ 2002년 2월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12.5%만이 영수증 발급 (2003. 2. 18.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건강연대)

제2003-86호	병역특례 제도개선 권고안
제34차 전원회의(2003.7.7)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잉여 병역자원 해소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병역특례제도가 적절한 관리.통제장치 미흡 등으로 각종 병역 비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각 부처별 병역특례 신설, 확대 요구로 동 제도의 확대운영이 예상되는 반면, 관련 병무비리는 사회적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패행위라는 인식하에서 관리.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함	
〈병역특례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특례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지정업체 대표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특례자 선발 제한	
▷ 복무관리 위반업체.특례자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 강화	
※ 별첨 : 병역특례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 결과 : 병무청에 권고	
4. 권고결과	조치 중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5호 (2003. 2. 3.) 『병역특례 대상자 불법 근무행위』

병역특례제도 개선권고안

해당 기관	병무청	권고 번호	제도03-1-2
-------	-----	-------	----------

병역특례는 정부지정 연구기관.산업체 근무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잉여 병역자원 해소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90년대 이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확대되면서 병역기피 수단 악용, 지정업체와 특례자간 병역특례매매, 특례자 선발과정의 비리 등 각종 병역특례 관련 부패가 국민불신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1. 지정업체 선정 및 선발 과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가. 지정업체별 연간 특례인원 사전배정(지정업체 재량권 축소)

- 병역수급 현황, 소관부처 추천상황 등을 고려한 배정기준을 마련, 업체별 특례인원을 배정(년 2회)함으로써 선발권 남용비리 방지
- 필요시 지방병무청에 소관부처 관계자, 지정업체 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병역특례 심의기구」를 구성.운영
- ※ 「병역특례심의기구」 민간위원 들을 실태조사에 참여시키고 조사결과를 연 초 지정업체 추천에 반영

나. 병역특례 관련 정보공개 확대

- 지정업체 현황, 배정인원, 증원현황, 특례자 선발결과, 실태조사 결과(우수업체, 부실업체 명기)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
- 구인.구직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제공 방식 개선

2. 특례자 선발요건의 합리적 개선

가. 특례자 선발제한 범위 확대

- 업체대표의 직계비속 외의 친인척, 업체지분 소유자 등 특수 관계자 선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
 - ※ 특수관계자(예) : 지정업체 지분 소유자, 투자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30조 개정

현재 제30조2항의 선발 제한범위를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에서 대표이사의 배우자, 일정지분 이상 보유자의 직계비속, 일정액이상 거대 투자자의 직계비속 등으로 확대

나. 지정업체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선발요건 개정

- 종사자의 특례 선발여부 전권을 업주가 행사함으로써 병역특례 배제, 부당 노동행위 강요 등 빌미를 제공하는 관련규정 개정
 - 특례자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그 범위내에서 지정업체의 특례자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물갈이수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 다만 예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자”를 특례자로 편입시킬 필요가 큰 경우에 한해 업체에 복무중이던 자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

⇒ 병역법 제37조 등 관련 운용 규정 개정

제37조 및 제3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입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서 병무청에서 T/O를 배정 받아 이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규정

- 지정업체 또는 대표자가 고발되어 벌금이상 신고받으면 그 업체에 특례자가 종사하고 있더라도 즉시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

⇒ 병역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개정

중대한 과실로 벌금이상의 형을 신고받은 경우에도 당해 업체에 특례자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없었으나 지정업체가 고발 등으로 인해 벌금이상의 형을 신고 받은 경우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

- ※ 선정이 취소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자는 전직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안 강구

⇒ 예시)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41조(전직대기기간의 연장) 이 경우 전직대기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위반행위 신고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지정업체 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에 대해서는 병무청 본청의 직접조사, 민.관 합동 조사 등 조사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위반행위 신고자 관련 정보 유출자(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조항 신설, 신고시 불이익 금지조항 신설 등 신고자 불이익 방지 대책 강구
- 복무실태와 비리유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등 신고제도 운영 개선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57조에 상기내용 반영

3. 복무관리 강화로 부패예방 효과 거양

가. 복무관리 위반업체, 특례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특례자를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키거나 제조.생산분야 특례자를 사무직.영업직 등에 근무시킨 때에는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고발토록 함
 - “복무기록 미관리 업체”에 대해서도 즉시 경고 조치(기존은 주의)
-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30조 개정
- 특례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무단결근시에도 연.월차 휴가일수 공제로 같음하는 대신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52조 개정

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업종별 위반유형 및 실태분석, 위험업체 집중관리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 국외 신학기 등록시기에 해외파견 승인 및 연장요청이 급증하는 경우 국외 영사관과 협조하여 불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 실시
 - 해외 파견 특례자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관계부처(외교부, 법무부 등)와 협조체제를 구축, 실질적인 조사 실시
 - 해외파견이후 주기적으로 공동연구, 기술도입 등 당초 파견 목적을 본인이 수행증임을 입증할만한 경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별표3] 에 동 내용 추가 개정

제2003-98호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35차 전원회의(2003.7.21)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최근 외국대학의 통신평정 박사학위, 국내 현지 사무소의 비인가 학위과정 모집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비인가 학위제도가 늘어나 그 학위 취득 등과 관련한 비리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이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열린 학위인정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른바 가짜 박사 양산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논의함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현행 학위신고제도를 보완하여 구체적 학위 내용, 과정이 등록되도록 조치			
▷ 비상설 심의위원회 운영 등 외국박사학위 관련 정보체계체계 강화			
▷ 가짜 박사학위 신고에 대한 정보공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방안 강구			
▷ 장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 인증 등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 결과 :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대로 조치(2003. 12. 31)	
		- 학위 신고요건 강화 및 학위내용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상설심의위원회 구성 등 추진	
5. 비 고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번호	제03-2-2
<p>비정상·비인가 및 가짜 외국박사학위 취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대상과 신고절차를 구체화·명확화하고, 정보·자료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수요처에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처의 심사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인증시스템 도입을 추진</p>			

1. 현행 신고제도의 보완

- 현행 단순 신고·등록기능에서 비정상·비인가 및 가짜 외국박사학위 취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요건을 강화
 - 신고목적의 재설정
 - 신고대상을 정규학위로 명확화
 - 학위내용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신고제출서류 및 신고필증 내용을 보완하고, 신규기관(학교)의 등록내용 추가
- ⇒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개정**

2. 외국박사학위 관련 정보제공체계 강화

- 외국박사학위 관련 정보·자료수집 체계 강화
 - 「신고제도의 보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각 국가별 대학학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자료의 수집체계 구축

(관련 기구 및 기능보강 필요)

- 각 대학 등 수요처에 학위관련 정보제공 기능 강화
- 학위내용 확인제도 시행 및 비상실 심의위원회 구성
 - 수요자가 학위내용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의결사항을 관련자에게 통보
- ⇒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훈령) 개정**

3. 가짜 박사학위 신고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 가짜 박사학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학위정보의 공개차원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선의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방안 검토

4.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고등교육 수학의 국가 간 상호인정 추세 및 가짜 또는 비정상적인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교육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 단기적으로는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증효과를 달성토록 하되,
 - 장기적으로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 등 학위에 대한 질적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제2003-105호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제37차 전원회의(2003.8.18)	정책기획실
<p>1. 의안개요</p> <p>○ 현행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나, 그 운용과정에서 구매기관과 조합 및 납품 업체와 사이에 유착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p>	
<p>2. 심의내용</p> <p>○ 조합회사들에 영향력이 큰 조합임원의 자격기준 강화 등 관련 법령개정을 포함한 개선안의 내용이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권고하기로 함.</p> <p><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물품추천시 현장조사 의무화 등) ▷ 물량의 불공정 배정 방지 제도 도입(공무원 출신의 조합임원 임용 제한 등) ▷ 비리조합에 대한 처벌 의무화, 위반업체 상시 적발·통제시스템 구축 등 <p>※ 별첨 :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p>	
<p>3. 의결 결과 : 중소기업청에 권고</p>	
4. 권고결과	조치 중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112호 (2003. 9. 1.)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계약 관련 부패행위』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중소기업청	권고 번호	제03-1-3
<p>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나,</p> <p>물품선정, 물량배정 및 수주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구매기관·업체간 유착 등 최근까지도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p> <p>물품 지정 및 물량 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매기관과 조합·업체의 유착을 방지하여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p>			

1. 물품지정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가. 물품 추천·지정 요건 합리적 개선

- 물품추천·지정시 요건 ('추천·지정요건' 및 '추천·지정 제외요건')을 개선하여 물품 지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상 물품의 추천·지정요건 등 합리화

중기청의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03.9) 결과를 반영하여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지정요건 개선

나. 물품 추천시 현장조사 의무화

- 조합이 구매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에게 물품을 배정할 때에 조합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 단체수의계약제도운용규칙 개정

조합은 물량배정에 앞서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물량의 불공정 배정 방지

가. 구매기관과 조합·조합원 유착 방지 대책 마련

- 차등배정제의 합리적 개선
 - 구매기관에서 차등배정 요구시 계약 특성별로 조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로 통보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9조 등에 (조합의 의무)규정 신설

- 차등배정 내역 (계약내용, 계약액, 배정 받은 업체 등) 대외 실시간 공개

- 공무원 출신의 조합임원 임용 시 유예기간 도입
 - 조합업무와 밀접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퇴직이후 일정기간 관련 조합의 전무이사 등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상무이사 등 자격기준) 개정

5급이상 공무원으로... 다만 퇴직전 3년 이내 해당 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업무에 종사한 자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임용될 수 없다.

- ※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 비공식적인 사전수주 활동 제한
 - 업체의 사전 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물품 정보(규격 등) 를 조합에 요구, 조합이 물품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
 - 구매기관이 조합에 대해서만 물품정보를 의뢰토록 (구매기관 의무)규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신설

- 업체에 구매기관의 계약 문의 요청이 온 경우 이를 조합에 의무적으로 보고
 - 물량배정시 가장요인인 '수주활동의 적극성'을 '보고의 적극성'으로 대체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4 기본항목 개정
- 이외의 방법으로 발주가 되는 경우는 사전 수주활동으로 간주하여 처벌
 - 부당 사전수주활동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

나. 불공정 배정 통제장치 현실화

- 연간배정기준표 현실화 및 대외 공개
 - 배정기준표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별로 품목지정·관리
 - 물품별 「연간배정기준표」 과 조합원별 「연간배정비율」 공개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동 규정 신설
- 물량배정심의회의 배정 통제 기능 확립
 - 물량배정 과정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배정심의회의 주기적 개최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회의결과는 공개)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의 3 개정

조합은.....물량배정심의회를 개최하되 외부전문가가 1인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효율적 부패통제 장치 마련

가. 비리조합에 대한 처벌 의무화

- 문제발생시 해당 조합의 "연도내 지정제외"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25조의2 개정

중기청장은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도내 해당물품을 지정제외하여야 한다.

→ 신고실적을 물량배정의 가장요인으로 반영하여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2조(물량배정기준) 제2항 별표4 개정

나. 위반업체 및 조합에 대한 처벌 강화

- 적발시 위반 업체의 내역을 관계자에게 공개하여 경각심 제고
 - 특별관리조합으로 적발시 업체내역 및 위반사항 등 공개
-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로 일정한 경우 1회위반시에도 해당업체에 대한 물량배정을 제한하나, 그 대상이 '제3차 하청생산 업체' 등 3가지로 국한
 - 비리근절을 위해 처벌대상 확대 ('동일업체 규정 위반' 업체 등)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1조2항 별표3개정

바.하청생산납품,동일업체 규정 위반 조합원은 1회 발생 시 물량배정에서 제한

- 조합 운영위반 (계약정보 미공개 등)시 조합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 부여

다. 신고제의 정착

- 조합원간 견제와 균형확립을 위해 조합내부에 비리 신고제를 도입
 - 사실확인인 증양회 등 조합 외부인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신뢰성 제고
- 신고에 대한 Incentive는 물량배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 도입

라. 위반업체 상시 적발·통제 시스템 구축

- '1개사 1조합 가입원칙 준수여부', '동일업체 여부', '위반업체의 물량배정 제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 Check 시스템 도입
 - 업종별로 주요 내역(대표자, 주생산품, 사업지등록증, 주생산시설, 주기술자의 각종 자격증 내역 등)에 대한 조합원 기본현황 DB 구축 후 위반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제2003-113호		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38차 전원회의(2003.9.1)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학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제반 여론을 수렴하여 정치자금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내년 총선 이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치자금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안을 권고함 《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선관위 지정 예금계좌 사용 및 수표,신용카드 사용의무화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후원회 결성 허용범위 확대 등 정치자금의 현실화 방안 강구 ▷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및 지출통제 강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 ▷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선관위의 실질적 조사권 강화 등 ※ 별첨 : 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3. 의결 결과 :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			
4. 권고결과		조치 중	
5. 비 고			

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해당 기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고 번호	제도03-1-6
<p>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아직도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 개혁 없이는 정치부패 척결이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p> <p>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중앙선관위 등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03. 6월, 8월)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의 노력이 아직 활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p> <p>학계,시민단체,선관위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천 가능한 권고안을 마련, 국회,정치권에 촉구함으로써 금년 정기국회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p>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지정 예금계좌 사용
 -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선관위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예 : 100만원) 수입,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지로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화
 - 공개원칙에 반하는 무기명 영수증은 폐지하고, 일정기간 내에 기명영수증을 발급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내역을 공개

2. 정치자금의 현실화 방안

- 후원회 결성 허용범위 확대
 - 점차적으로 지방선거(광역,기초 단체장), 대통령 후보경선시 후원회 등을 허용하고 범정당내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 정치자금 규제대상의 확대
 -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돈은 정치자금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선관위 보고 후 공개하도록 함.

3.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및 지출통제 강화
 - 포괄적인 개념정의로 보조금 유용에 악용되는 정치자금법 제19조 제2항 9호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삭제
 -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 국고보조금의 정당회계 보고시 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첨부 의무화
 - 현재 선관위가 필요할 때에만 회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조사실시 의무화
-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
 - 정당에 배분되는 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나머지 50%는 구,시,군 지구당에 지급하는 등 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4.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 주요 정치자금범죄(정치자금법 제30조제1항, 제2항)로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실질적 조사권 강화
 - 자료요구 대상 확대, 제한된 계좌추적권 도입 등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제2003-124호		면세유공급제도 개선 권고안	
제39차 전원회의(2003.9.22)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농민, 어민의 간접소득 증대와 조세감면 효과를 위한 면세유의 공급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농어민과 주유소 업자 및 관련 공무원 사이에 유착을 통한 부패행위가 발견되므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면세유 공급·사용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포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을 권고함 〈면세유공급제도 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계, 선박의 관리강화,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관리 강화 등 배정단계의 운영시스템 강화 ▷ 면세유 전용카드제 도입, 면세유 공급 주유소의 농·수협 직영화 추진으로 공급과정의 투명성 확보 ▷ 행정기관간 연계 및 지도단속 강화,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고발자 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사후통제 시스템 확보 * 별첨 : 면세유공급제도 개선 권고안			
3. 의결 결과 : 재정경제부에 권고			
4. 권고결과	조치 중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173호 (2003. 12. 15.)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의 면세유 부정사용 등」		

면세유공급제도 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장관	권고 번호	제03-1-4
농·어가의 간접소득증대 일환으로 공급하는 면세유는 조세감면 효과가 커 이를 노린 각종 부패행위가 지속되는 추세인 가운데 최근 농·어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어민과 주유소업자가 결탁하여 부정유출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양경찰, 농·수협 직원의 구속 등 공직관련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사용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세유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세포탈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1. 배정단계의 운영시스템 정비

가. 공급대상 관리강화 방안 마련

-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명확화
 - 제경부 : 관계부처 감사, 실태점검결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 농림부·해수부 : 정부합동감사시 읍·면·동, 농·수협 등의 이행 상황 점검조사 및 농기계·어선 등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국세청 : 불법유통 다발지역 주유소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
 - 읍·면·동 : 「농기계보유량」 실태관리 철저 및 조사결과 농협에 통보의무화
 - 농·수협 : 시설농업(온실, 건조장, 양식시설 등)에 대한 「면세유관리대상」 관리 및 반기별 현황조사 확행

- ※ 조사결과 실적이 부실한 단위조합은 배정기준량을 감량 조치하는 등 연대책임제 도입
- 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계의 관리강화
 - 난방기 등의 공급기준을 보유대수 기준에서 경작면적, 운영 여부 등을 감안한 「가중 공급제」 도입
 - ※ 온실, 건조장 등 일정규모 이상 사용농가부터 제도도입
- 어업용 면세유 공급 선박의 관리강화
 - 소형선박에 대한 관리시스템도입으로 미등록·미조업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원천차단
 - ※ '02. 7 이전 등록된 2톤 이하선박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쌀생산조정제 및 감척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어민의 관리강화
 - 쌀생산조정제 지원농가의 면세유 공급지침 마련
 - 감척사업 지원어선에 대한 일제등록정비 추진 및 소유권의 지속적인 추적, 면세유공급 등 사후관리 연계시스템 구축

나.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관리 강화

- 출고지시서 발급시 실제조업(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제출요건 강화
- 출고지시서 발급시 위판증명서와 계측기 실적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인간 매매확인서의 경우 세무서에 실적을 신고하는 방안 마련
- 선박 입·출항신고서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신고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신고의 실시간(온라인) 관리방안 도입 검토

- 시간계측기 미 설치선박에 면세유 공급을 중지하고, 계측기 실적 미제출 선박은 일정비율 감량공급
- 계측기 불법조작 방지를 위해 봉인 임의파손 금지 및 탈·부착이 필요한 경우는 면세유 공급기관장의 승인 후 시행토록 의무화
- ⇒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등을 변경하여 동 내용 반영

2. 공급과정의 투명성 확보

가. 면세유 전용카드제 도입

- 일반상거래로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여 부정유통 관행을 차단
- 본인의 직접서명으로 대리인을 통한 부정유출소지 제거
- 면세유 판매증빙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로 면세유 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의 매집행위 차단가능
- ※ 예시) 일정규모(연간 8만 리터)이상 면세유 수급자에 적용하는 방안 등

나. 농업용 면세유 구입권의 유효기간 및 주유소의 면세유 공급확인서 제출기한 단축

- 면세유 구입권의 유효기간 및 공급확인서의 반환기한을 발급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로 단축
- 면세유 구입권 불법매입, 주유소간 거래, 시세차익을 노리고 보관하는 행위 근절

다.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공급주유소의 직영화 추진

- 수협은 직영화로 전환을 추진하고, 농협은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행주유소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 검토

3. 사후통제 시스템 확보

가. 행정기관간 연계 및 지도단속강화

- 농림부, 해수부, 농·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 강화 및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실시제도화
- 연간 점검계획수립 의무화 및 대행주유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실행체질시, 부정행위신고 안내문 부착 등 제도활동 강화

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정행위 사전예방
 - 농어민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허위증명 제출시 배정물량 감량조치 및 주유업자의 불법유통 가담시 영업정지제도 도입
- ⇒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동 내용 반영

다. 고발자 포상금 제도 활성화

- 세금환수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
 - 신고인이 기한 내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포상금 신청기한을 고지토록 의무화
- 행정기관 홈페이지, 지역 언론사, 반상회보, 시민단체 등에 적극 홍보토록 조치

제2003-134호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22)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조성하여 운용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상대로 한 강제모금, 목적외 사용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동종 비리 발생을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자발적 모금후 정해진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발전기금제도 본래 취지대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학교발전기금 접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반시 행정, 재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을 권고함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및 사용내역 공개 ▷ 학교시설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기금 각출 및 모금할 수 없도록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 ▷ 관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모금·운영사례 신고 창구 운영 ▷ 위반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등 ※ 별첨 :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 결과 :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4. 권고결과	추진중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2호 (2003. 1. 6.) 『공립학교 교사의 부당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학교발전기금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권고 번호	제도03-2-3
-------	-----------	-------	----------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후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어떤 명목의 찬조금도 학부모에게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 강제모금, 찬조금 형식을 취한 불법모금 및 목적 외 사용, 관리소홀, 사용내역 미공개 등 불법과 부작용이 성행함에 따라 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기본시설을 위해 발전기금을 각출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부패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언제든지 발전기금 조성규모나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및 사용내역 공개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보완

2. 학부모로부터 각출하거나 모금하는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

-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의 구입명목으로 발전기금을 각출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조정
- ※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금운영계획에 의한 발전기금 모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보완

3.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

-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
 -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보완

4. 위반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 학부모 등 민원인으로부터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민원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청은 특별감사 실시
 - 불법모금이나 불법사용 적발시 일정기간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
 - 기금조성과정에서 위반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학교의 기금 조성을 중단하고, 기 조성한 금액은 반환 조치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보완

제42차 전원회의(2003.10.20)	정책기획실
<p>1. 의안개요</p> <p>○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 미흡, 계약체결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업체·공무원간 유착, 정치인 이권개입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p>	
<p>2. 심의내용</p> <p>○ 전자공개 입찰제도의 활성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기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등으로 계약수행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을 권고함</p> <p>〈건설공사 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계획 공시를 통한 건적참여 업체 확대 ▷ 긴급공사 인정 사유에 대한 객관성 확보로 수의계약 허용범위 구체화 ▷ 특정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도입 ▷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p>* 별첨 : 건설공사 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p>	
<p>3. 의결 결과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에 권고</p>	
4. 권고결과	추진중
5. 비 고	

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

【조치사항】

⇒ 긴급공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 요령”에 명시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 도입

3. 특정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공사(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정공사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회계예규로 규정

4.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도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수의 계약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 제고

【조치사항】

⇒ 소액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금액(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에 반영)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권고 번호	제도03-2-4
-------	--	-------	----------

건설공사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추정가격이 소액인 경우에 한해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외부의 청탁·압력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선의의 기능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수의계약 관련 법규를 구체화하고 계약업무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패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관〉

1. 수의계약 건적참여 확대

○ 건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적제출을 원하는 업체 모두에게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건적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배제

【조치사항】

⇒ 건적서 접수시 건적 참여 희망업체 모두에게 건적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2.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범위 구체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긴급공사(천재·

5. 수의계약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에 주민의 감시기능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조치사항】

⇒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사유평가서” 등의 기준과 수의 계약 사유평가 결과, 계약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 (회계예규 신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소관〉

□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관련지침 마련

○ 재정경제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긴급공사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산하기관에 시달

【조치사항】

⇒ 긴급공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시달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내년도 우기 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 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전자공개 수의계약 활용

제2003-145호	농지전용 제도개선 권고안
제42차 전원회의(2003.10.20)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의 농지전용 과정에서 공무원·건축업자·민원인 등이 유착된 편법 전용, 농지관리위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부조리 사례가 발견되므로, 이를 근절하고 농지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WTO체제 진입과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을 감안하여 엄격한 농지전용제도의 유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수도권에서 불법 용도변경을 억제하고 사후관리,통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을 권고함 〈농지전용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불합리한 용도변경 불허 등 '용도변경 운영개선', '신고로 전용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전용신고 기준개선 등 관련 법령 정비 ▷ 지도단속 실명제 확행, 농지 및 지적 관련 전산자료 연계 등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단속, 불법 농지전용 행위 고발 등 사후관리 시스템 확립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개선 ▷ '신고 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등	
3. 의결 결과 : 농림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 준비중
5. 비 고	

제2003-155호	산지전용제도 개선 권고안
제43차 전원회의(2003.11.10)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형질변경은 구조적인 부패취약분야로 편법·불법 전용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불법행위 묵인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산지전용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하도록 관계 법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을 권고함 〈산지전용제도 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농림어업인' 입증의 객관성 확보, '시설설치조건' 판단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등 법규정의 명확화로 재량행위 축소 ▷ '농림어업용 시설'의 합리적 전용규모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전용허가 기간연장' 운영 개선 등 관련 법규정 정비 ▷ 지도단속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처리기준 마련, 신고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등 사후관리시스템 확립	
3. 의결 결과 : 산림청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 준비중
5. 비 고	



IV. 例規訓令, 其他



제2003-30호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운영지침안
제28차 전원회의(2003.3.17)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통일적인 세부 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화환, 화분'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 소액 선물의 접수가능 여부 등 지침안 전반에 대하여 논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운영지침안 주요내용> ▷ 대통령령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제정과 관련한 통일적 기준 제시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을 제한하는 세부기준',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 등 ▷ 각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행동강령 제,개정시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 등 이행관리 체계 확보	
3. 의결 결과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각 기관에 통보	
4. 비 고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 부록에 첨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운영지침

I. 목 적

-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II. 법적 근거

-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III.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영제24조)

○ 제정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기관, 부,청,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교육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

○ 명 칭

- (기관명)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약칭:(기관명)공무

원 행동강령]

<예시> : 재정경제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재정경제부 공무원행동강령), 강릉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강릉시공무원행동강령)

○ 제정 형식

-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위원회, 청 등) : 훈령
 ※ 부령으로 제정할 경우 법제처 심사 필요
 ※ 청단위 기관은 부령 제정권이 없으므로 훈령으로 제정
- 지방자치단체 : 규칙
- 교육자치단체 : 교육규칙

○ 제정 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규범이 되도록 대통령령의 내용 및 기관별 특수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
- 기관별 행동강령에 포함할 내용
 - ① 대통령령이 직접 규정된 사항
 - ② 대통령령의 위임사항
 - ③ 기관별 특수한 사항
- ※ 대통령령의 위임사항 위주로 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지양
 < 대통령령의 구체적 위임사항 >
 -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영 제2조)
 - . 직무관련 정보의 범위(영 제12조)
 - . 금품 등 수수금지의 예외 인정 범위(영 제14조)
 - . 경조금 수수 가능 범위(영 제17조)
 - . 금지된 금품의 처리기준 등(영 제21조)
- ※ 기타 기관별 특수한 사항은 지침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정 가능

○ 제정 기한 : 2003. 5. 18 (대통령령 시행일 2003. 5. 19)

※ 규칙으로 제정시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에 보고해야 하므로 업무 추진시 참고 (지방자치법제21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9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통보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시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영 제24조)

※ 제2호, 제3호, 제6호와 관련한 직무관련자 정의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부패와 관련 없는 단순증명·확인서 발급 민원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

- 국·공립학교 교직원 : 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
- 복무중인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의 지도·감독자 : 당해 군인 등의 부모

IV. 행동강령 제정·운영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1) 직무관련자(영 제2조제1호)

인허가, 수사, 재결, 징집, 계약 등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단체)
▲ 영 제2조제1호(가~바목)에서 예시하는 이외의 직무관련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제1호 사목)

○ '사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부패방지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소관업무별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지정

<기관별 직무관련자(예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의 민원사무 관련자
-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자 또는 신고자(제2호)
-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자(제3호)
-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제6호)

(2) 직무관련공무원(영 제2조제1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기관의 담당공무원)
▲ 직무관련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도록 위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업무별 직무관련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 지정

<직무관련공무원의 유형(예시)>

- 당해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간
- 당해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인사·감사·평가 등의 업무 담당자간
-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예산·산후·조직·법령·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 수행자간

- .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감사 등 총괄업무 담당자와 각급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담당자간
- .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업무 담당자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간
- 행정기관의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업무위임자와 수임자간(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3) 선물(영 제2조제3호)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영 제2조제3호)

-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
 -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 탑승권 등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해석
 - ※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영 제2조제1호 사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단위기관의 장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 등 기관의 장

2. 적용대상(영 제3조)

○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부패방지법 제8조제1항)

○ 기관별 행동강령 적용대상

- 훈령·규칙 등 제정단위기관별 소속공무원에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된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정제 등의 절차는 원 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법부규정 제7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영 제4조)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처리 절차

-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 소명 → 부당한 지시 계속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 소명 절차

-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 소명내용은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명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

소명을 지양하고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 :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영 제5조)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가능

- ‘자신의 이해’에 대한 해석
 -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
 - ※ 예시 : 토지보상수용, 국유재산 매각, 승진심사, 인사전보안 작성, 징계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대상을 제한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영 제8조)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 정당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 당 :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지구당, 당원상의 기구

- 후 원 회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치단체 : 정치 사조직 포함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영 제7조)

공무원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금지

- 요건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판단기준
 - ※ 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의거 판단
- 「재산상 손해」에 대한 예시
 - ※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영 제12조)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제2항)

- 소관분야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제한 세부기준 마련
 - 제한대상, 제한 범위, 제한 기간 등
 - ※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 관련 규정(증권거래법 제42조, 제83조, 제206조의9)(증권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식거래 제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예시)>

-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각급 기관의 기금운용 부서 등
- 부동산 거래(투자) 규제 : 건설교통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 담당부서 등) 등

8.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영 제13조)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공 용 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
 - 청사, 관사, 관용차량, 건설중기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판단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 ※ 목적 외 사용 예시
 - . 관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을 개인목적으로 사용

9.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영 제14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

(1)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제1항)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음식물·편의)에 대한 해석(제2호)
 - 직무관련자의 순수성,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
 - 예) 지도감독 대상사업체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등
 -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일선 민원부서, 지도단속 부서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을 엄격히 규제 필요
-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한 금품 등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각출한 금품 등은 수수 금지

○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제6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영 제14조의 제정취지 및 당해 기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범위를 제정하되,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상품권 포함) 및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허용되는 경우 : 예시>

- 국·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2)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제2항)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제1항 1~6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직원 상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제1항제2호), 선물(제2항 제2호)

※ 직무관련자의 순수성,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예 : 3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한도 참고)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함.

- 음식물 : 업무협의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 편의 :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 시 현지차량 편의제공 등

- 선물 : 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 직원상조회 등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소속기관 내 직원의 소모임을 의미(예 : 직급별 상호회 등)

○ 소속기관의 장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물품 등(제1항제6호)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금지됨

- 자기부담으로 하는 골프는 가능

※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10. 외부강의 등(영 제15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영 제15조)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제외

○ 신고대상 : 월중에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가 당해연도 내에서 3회 이상인 경우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1회당 의미 :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용·대상·날짜·시간 관계없이 1회로 판단

.「외부강의 등」이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력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됨(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추후 지침 시달예정)

○ 신고제외 대상

- 군인복무규율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

①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외부강의 등

③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여 정부정책 또는 소속기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외부강의 등

○ 신고 시기

- 사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대학강의 등)

- 외부강의 등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한 후 수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고

11.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영 제17조)

(1) 경조사의 통지(제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경조사 통지 금지
- 친족, 전소속 또는 현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 가능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는 가능

○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제외)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 없는 자

- 친족, 전·현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기관 홈페이지 게재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지로 보아 허용

○ 통지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

※ 신문, 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

. 서울시의 경우 본청과 구청은 별도 기관으로 간주

.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역별 특별행정관청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 :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하였던 모든 기관을 의미

(2)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제2항)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
- 친족, 종교단체, 친목단체,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품 등은 허용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대한 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현재의 관행과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조금품 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 **5만원 상당**이 경조금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과다한 경조금품 등 수수를 통한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함.**

<참고사항>

- 경조금품 금액기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현대리서치, 2002년 4월)
.일반국민(5만원 한도: 74%) 공무원(5만원 한도: 8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축의.부의금 상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15천 원

○ 영 제17조제2항제2호는 정관, 회칙 등이 마련된 단체가 회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계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한정

○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영 제17조제2항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는 사항
.예시 : 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하는 금일봉, 화환 등

12.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영 제21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받은 금품 등과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
- 멸실.부패.변질 우려 또는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금품 등 반환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예시)

- ①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 즉시 반환
- ② 멸실.부패된 경우 폐기 처리하고 관련 사실을 제공자에 통보
- ③ 제공자를 모르거나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실물법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귀속, 불우이웃돕기, 자선단체 기부 등의 용도로 사용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신고대상인 경우(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우선적용

<참고사항 : 관련사례>

▲ 서울시 ‘클린신고센터’ 운영절차

- 신고대상 : 비자발적으로 받은 금품, 본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금품 등
- 신고금품 처리 :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조치후 세입하고, 해당공무원은 불문, 표창, 해외견학, 징계감경 등 혜택 부여

13.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영 제2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 단, 소속기관의 규모.성격.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정대상기관 : 기관장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인 기관
- 지정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예방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감사관(또는 감사담당관)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감사(담당)관이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예시)>

- . 중앙행정기관(부처, 위원회, 청 등), 시도, 지방교육청 : 감사(담당)관
- . 기초지자체(시.군.구) : 기획감사담당관
- . 지역교육청, 지방노동청 : 관리과장
- . 철도청 지역사무소.관리역 등 : 감사담당관(또는 관리과장)
- . 기타 : 경찰서(청문담당관), 초·중·고등학교(교감) 등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23조)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4조)
.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영 제5조)
.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영 제8조)
-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영 제18조, 제19조,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소속기관 관리 등(영 제23조)
-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 등 각종 신고의 처리

제2003-57호		부패방지위원회윤리규정 개정안	
제31차 전원회의(2003.5.19)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위원회 훈령 제2호로 발령, 시행중인 ‘부패방지위원회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2003. 2. 18.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전문 개정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부패방지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 윤리 및 행동 준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함			
<개정 ‘부패방지위원회윤리규정’ 주요내용>			
▷ 명칭을 「부패방지위원회공무원등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으로 변경			
▷ 행동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 범위 규정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소명 후 불이행 근거 마련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대상으로써 친족의 범위 및 직무수행 지침			
▷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의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청탁에 대한 직무수행 지침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제도			
▷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반환 의무 등			
3. 의결 결과 : 부패방지위원회훈령 제14호 발령(2003. 5. 19)			
4. 비 고		※부패방지위원회공무원등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별첨	

부패방지위원회공무원등의청렴유지등을 위한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법 제8조,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2조 및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그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 소속직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전문위원, 위원회에 파견된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용직·계약직 그밖에

형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②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직원이 휴가 또는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속직원의 책무) 위원회 소속직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위원회 소속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
2. 위원회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할 것
3. 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위원회 소속직원이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위원회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혜의 배제)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지연.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되며,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으로부터 일체의 후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직무관련자등 방문)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소속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 소속직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위원회 소속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적 중립의 유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영리활동의 금지) ①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회 소속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조합·그밖의 영리업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위원회 소속직원의 성명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②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회 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③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회 소속직원 개인명의의 지적 또는 감성적 역량에 기초한 단행본 또는 번역서 등의 출판은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소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서적의 출판은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제18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③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 소속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품토의 조성

제20조(의부강의등의 신고) ①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회 소속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의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의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의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회 소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의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에 상근하는 위원회 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의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의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위원회 소속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위원회 소속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③위원회 소속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 소속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위원회 소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위원회 명의로 지급되거나 위원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23조(비밀의 유지)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료·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
2. 위원회의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소속 기간의 종료후 3년동안 재직시 지극한 자료·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성희롱의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재정보증의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동료 직원은 물론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도박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위반시 조치

제27조(규정의 준수 의무와 책임)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위원회 소속직원이 행동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위원회 소속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행동강령실시의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이 규정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 소속직원이 행동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행동강령실시의위원회(이하

“행동강령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1조(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구성)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행동강령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이 지정한 3인.정책기획실장.법무관리관 및 신고심사국장 으로 구성한다.

제32조(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행동강령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행동강령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심의. 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외된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징계 등)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소속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9조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위원회 소속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회 소속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신규임용시 행동강령 및 이 규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위원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소속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및 이 규정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및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회의 정보관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직원이 법률에 정한 개인 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함과 함께 위원회 소유 및 보관자료가 부당하게 접근.제용되거나 남용.오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향우회 또는 동창회 임원직 사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8조제2항의 향우회 또는 동창회 임원직을 맡고 있는 위원회 소속직원은 이 규정 시행이후 3월안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개최.선출시기 등으로 3월안에 사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종료후에는 임원직에 연임.재취임할 수 없다.

제5조(재정보증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재정보증이 된 위원회 소속직원은 이 규정 시행이후 3월안에 그 재정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정보증을 3월안에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정보증기간 종료후에는 재정보증이 될 수 없다.

제6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패방지위원회 파견직원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서식중 "부패방지위원회 윤리규정"을 각각 "부패방지위원회공무원등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으로 한다.

② 부패방지위원회 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법무관리관중 “위원회 윤리규정”을 “위원회 행동강령”으로, “윤리심의위원회”를 “행동강령심의위원회”로 한다.

경조사 관련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준(제22조제3항관련)

구 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준
1. 실.국장급 이상	5만원
2. 과장급 이하	3만원

※ 이하 별지 1-9호 서식은 첨부 생략

제2003-74호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33차 전원회의(2003.6.16)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5개 분야 8명)을 위촉함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5개 분야 총 8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 등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연구(3인) - 윤태범(39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조은경(40세),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 윤종철(42세),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청렴도 측정 모형개발 연구(2인) - 박중훈(45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박영원(32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공직자 재산심사제도 연구(1인) - 이상수(35세),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1인) - 김 택(40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부패방지 교육교재 제작(1인) - 이태영(39세), 한국전자정부연구원 선임연구원	
3. 의결 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3-85호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추가)	
제34차 전원회의(2003.7.7)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4개 분야 7명)을 추가 위촉함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4개 분야 총 7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단체수의계약분야 제도개선 추진(1인) - 송장준(48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농지전용업무 제도개선 추진(1인) - 최혁재(47세),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건설·건축분야 제도개선 추진(3인) - 박재규(42세),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실장 - 김재영(54세), 국토연구원 연구실장 - 이상호(39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연구부장 ▷ 행동강령 관련 보완 발전방안, 공직유관단체 적용방안연구(2인) - 표창원(37세), 경찰대학교 조교수 - 김기찬(45세), 카톨릭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3. 의결 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3-114호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계획안	
제38차 전원회의(2003.9.1)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문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율적인 부패 척결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2003년도 『청렴도 측정계획안』을 입안하여 확정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전년도에 비해 측정대상기관 및 업무범위가 확대된 만큼 청렴도 측정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수렴함 <청렴도 측정계획안 주요내용> ▷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를 평가지표로 하여 측정대상업무별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 측정대상 기관 및 측정업무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중 대민업무가 있는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2002년 71개→2003년 310개 기관으로 확대) - 인·허가, 지도단속, 계약업무 등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를 측정하고, 조사표본을 감안하여 기관별 10개 이내로 제한	
3. 의결 결과 : 청렴도 측정계획안 확정	
4. 비 고 ※ 청렴도 측정계획안 : 별첨	

I. 청렴도 측정 목적

-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별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II. 청렴도 측정모형

※ 청렴도 측정모형은 개선도 분석을 위해 2002년 평가모형과 동일성을 유지하되, 측정대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

1. 청렴도 평가항목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11개 항목으로 구성
 - 체감청렴도 : 금품·향응 등을 실제로 제공한 규모, 빈도 등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등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
- 11개 평가항목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표상의 문구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함.

2. 평가항목별 가중치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가중치 산출방식

- 상위영역(델파이), 하위영역(AHP), 설문항목(고정종합척도법)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상위영역	하위영역	설문항목
체감청렴도 (0.494)	부패경험(0.483)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부패인식(0.517)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잠재청렴도 (0.506)	업무환경(0.241)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1.000)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0.667)
	행정제도(0.237)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기준절차의 현실성(0.569)
	개인태도(0.294)	정보공개의 정도(0.431)
		업무처리의 공정성(0.599)
	부패통제(0.228)	금품·향응의 기대(0.401)
부패방지 노력도(0.585)		
	이의제기 용이성(0.415)	

※ () 안은 항목별 가중치이며, 기관별 개선정도 분석을 위해 2002년도와 동일

3. 평가항목별 척도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정확한 응답, 응답결과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7점 척도 사용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리커트 척도로 구성

4. 조사방식

-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
- ※ 민간 조사기관인 한국갤럽(경쟁입찰계약으로 선정, 7.30)에서 실시

5.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 종합청렴도는 업무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업무별 등비중)
-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 : 7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III.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법상의 공공기관 중 대민업무가 있는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71개 → 310개)
- 2002년 측정기관 유형에서 법제처 및 기초자치단체(232개) 추가
- 공직유관단체는 335개 중 대민업무 비중 및 수행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6개 기관 추가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
중앙부처, 위원회(20)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법제처
청(14)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264)	광역자치단체 16, 기초자치단체 232, 지방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12)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환경관리공단

IV.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및 표본추출

1.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 공공기관의 대민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를 측정
- 인·허가, 지도단속 등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외에 계약(구매, 용역, 공사 등)업무도 포함
- 단순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제외(증명서발급, 상담 등)
-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고려 측정업무는 10개 이내로 제한

2.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선정

3. 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방식

- 조사표본 규모 : 총 59,700 표본
 - 기관별 5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에 따라 일부 조정(기초자치단체는 100표본 내외 조사)
 - 업무별 조사표본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 50표본 이상 조사 원칙
- 자료제출기관 선정 : 측정대상업무별 무작위 선정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systematic) 방식으로 추출
- 표본추출 대상기간 : 2002. 9. 1 ~ 2003. 8. 20(1년)

V. 향후 추진계획

- 측정대상기관별 민원인 명부 수집 : 9월 초
- 민원인 명부 분석 및 제출명부 현지점검 : 9. 1 ~ 9. 30
- 민간조사 전문기관 전화조사 : 9. 16 ~ 12. 15(3개월)
-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분석 : 12월 말

제2003-156호	신고사무운영지침 개정안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현행 『신고사무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2호, 2002. 2. 24)』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신고사무처리지침』으로 전문개정함	
2. 심의내용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사항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의결사항과 종결 처리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정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논의함 <개정안 주요내용> ▷ 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2호의 명칭을 현행 『신고사무운영지침』에서 『신고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사항 처리절차 개선 ▷ ‘접수⇒확인⇒처리⇒기록관리’ 등 실제 신고업무처리 순서 및 절차에 맞게 편제 개선 ▷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내부적으로 적용해 온 ‘종결처리’ 기준을 명시 ▷ 신고사항 확인기간 연장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명시 등	
3. 의결 결과 : 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6호로 발령	
4. 비 고	※ 신고사무처리지침(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6호) : 별첨

신고사무처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패방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 【신고 등의 접수】 ①부정부패신고센터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신고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한다.

1. 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신고자가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 불이첩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신고센터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4조 【신고자 상담】 ①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은 부정부패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 심사관실 또는 신고자가 상담을 요구한 현지에서 실시한다.

②제1항의 상담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재하여 신고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센터장은 이를 종합 관리한다.

제5조 【신고 접수절차】 ①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신고센터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

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기록】 ①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및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2항의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편철하여 신고기록으로 관리한다.

②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신고센터 또는 심사관실의 담당직원은 신고사항 처리 등의 각 단계마다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록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 편철한다.

제7조 【출장 신고접수】 ①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관 등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서 접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 접수를 받은 심사관 등은 지체없이 신고서 등을 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고, 신고센터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 【신고사항의 인계 등】 ①신고센터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를 작성하여 신고심사국장(이하 “심사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후 위원장이 정하는 배정기준에 따라 심사관에게 배정하고 해당 신고기록을 인계한다.

②신고센터장은 내부공익신고의 경우나 신고자가 신분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보장 관련 사건명부”를 작성하여 보호보상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을 인계받은 심사관은 이를 전담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신고센터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반복신고의 종결 처리】 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일 경우에는 심사관실 담당직원의 확인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한다.

제10조 【주심위원 지정】 ①신고센터장은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대상 신고 및 기타 부패행위와 관련된 중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주심위원 지정없이 배정된 신고사항이라도 부패행위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센터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심위원 지정 요구서”에 의해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신고센터장은 주심위원 지정현황을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사항의 확인】 ①심사관은 법 제29조제1항 각호 및 영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0조제1항제7호의 신분공개 동의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2항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해 신고서 접수시에 이미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신고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신고센터장이 제1항 후단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심사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안의 다른 부처와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신고사항의 확인은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아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자 등의 출석】 ①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자의 출석요구는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출장 확인】 ①신고자가 출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관 또는 담당직원은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진술을 회망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4조 【신고의 보완】 ①심사관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확인서의 작성 등】 ①심사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기록 목록”의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신고의 취소】 ①신고자가 제8조제1항의 신고사항 배정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제5조제1항의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한다.

②신고자가 제8조제1항의 신고사항 배정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배정받은 심사관실에서 이를 접수하여 신고센터장에게 그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신고센터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7조 【신고사항의 심사】 ①심사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심사국장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3. 영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불이첩”. 다만,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종결” 등으로 처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국장은 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심사국장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 관련기관이 해당 신고사항 등을 부패방지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참고자료 통보”의 심사의견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⑤심사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감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 사인간의 분쟁의 해결 또는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

라 해결해야 할 사항

5. 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에 의한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⑥심사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 송부”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⑦심사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①심사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 각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기타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신고사항의 고발】 ①위원회가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심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

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20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심사관은 관련공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이첩서”
2.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처리절차 유의사항”
3.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②심사관은 제1항의 이첩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첩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심사관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1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①심사관은 고발, 이첩, 불이첩, 참고자료 통보, 관계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영 제22조제4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신고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고센터장은 그 처리결과 내용을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신고센터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심사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 또는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7조제2항 각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심사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심사국장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신고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통보를 받은 신고센터장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한다.

제24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영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반송된 신고사항은 조사기관을 재확인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첩사항 조사결과 처리

제25조 【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①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심사관은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조사결과와 요지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신고센터장에게 통보하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자에 대한 통지시에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고센터장은 조사결과 내용을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①심사관은 조사결과와 통보내용에 대하여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요구로 인하여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심사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신고기록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신고센터장은 심사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조사 필요성 심사】 심사관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9조 【재조사 요구 등】 ①심사국장은 법 제3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조사 요구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심사국장은 제27조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원회가 재조사요구를 의결한 경우 심사관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의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심사관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조사요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31조 【재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및 처리】 재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고발사항 수사결과 처리

제32조 【수사결과와 통보 접수】 제25조의 규정은 고발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재정신청 심사 등】 ①심사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패행위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고발한 날부터 3월 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위원회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국장은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 등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⑤심사국장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정신청서 작성 등】 ①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신청서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 ①심사관은 재정신청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정신청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심사관은 재정신청 사실을 신고센터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신고센터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재정신청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정신청의 취소】 ①심사국장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

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재정신청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재정신청 취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신고센터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37조 【처리상황 점검】 심사국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①심사관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도개선 담당부서 및 신고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심사관실의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고센터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고자 신분공개시 조치】 심사관은 영 제33조에 의하여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장 신고기록의 보존

제41조 【신고기록의 보존】 심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은 다음해의 1분기 안에 신고센터에 이관하여 보존하게 한다.

제42조 【보존기간】 ①신고기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예안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한다.

1. 영구 :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관련기록 기타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
2. 10년 : 고발 또는 이첩된 사건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기록
3. 5년 : 이첩 또는 불이첩된 사건중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건의 기록
4. 3년 : 그 밖의 사건의 기록

②신고센터장은 신고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록물의 폐기심사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인계한다.

제43조 【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4조 【보존절차】 신고센터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 【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46조 【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 8 장 기록의 열람 및 기타 보존사무 처리

제47조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①신고자,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신고센터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 【허가여부의 결정】 ①심사국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국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국장은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기록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열람·등사의 제한】 심사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0조 【열람·등사의 방법】 ①기록의 열람·등사는 심사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심사국장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심사국장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신고기록의 대출】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 【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 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의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심사국장의 결제를 받아 이를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그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한다.

제53조 【기록물의 폐기】 총무과장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

계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폐기 또는 재분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 1. 1 부터 시행한다.

※ 별지 각호 서식은 첨부 생략함

第 2 部



報告事項

- I. 報告目錄
- II. 主要 報告要旨



I. 報告目錄



報 告 目 録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24차〉

제2003-3호	'03.1.6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	---------	----------------	-------	--

〈제25차〉

제2003-7호	'03.2.3	신분보장 제2002-4호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요구 결과보고	신고심사국	
제2003-8호	'03.2.3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9호	'03.2.3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6차〉

제2003-14호	'03.2.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5호	'03.2.17	조사결과 이의신청사항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6호	'03.2.17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3-17호	'03.2.17	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통보내용	신고심사국	

〈제27차〉

제2003-24호	'03.3.3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	---------	----------------	-------	--

〈제28차〉

제2003-28호	'03.3.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29호	'03.3.17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3-31호	'03.3.17	200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정책기획실	요지1
제2003-32호	'03.3.17	2002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정책기획실	요지2

〈제29차〉

제2003-40호	'03.4.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41호	'03.4.7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30차〉

제2003-49호	'03.4.21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50호	'03.4.21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3-51호	'03.4.21	제3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례보고	신고심사국	

〈제31차〉

제2003-59호	'03.5.19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60호	'03.5.19	군수품 구매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진정사항 조치	신고심사국	
제2003-61호	'03.5.19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3-62호	'03.5.19	보상금의 비과세 소득 지정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경과	신고심사국	

〈제32차〉

제2003-69호	'03.6.2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70호	'03.6.2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3-71호	'03.6.2	신분보장조치요구(2003-3호)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신고심사국	

〈제33차〉

제2003-75호	'03.6.16	주요 진정사항 관계기관 송부	신고심사국	
제2003-76호	'03.6.16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77호	'03.6.16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3-78호	'03.6.16	신분보장 관련 진정사항 조치계획	신고심사국	

〈제34차〉

제2003-87호	'03.7.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88호	'03.7.7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35차〉

제2003-99호	'03.7.21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00호	'03.7.21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	-----	-----	------	----

〈제37차〉

제2003-106호	'03.8.18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07호	'03.8.18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38차〉

제2003-115호	'03.9.1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16호	'03.9.1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39차〉

제2003-125호	'03.9.22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26호	'03.9.22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40차〉

제2003-135호	'03.10.6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	----------	----------------	-------	--

〈제42차〉

제2003-146호	'03.10.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47호	'03.10.20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43차〉

제2003-157호	'03.11.1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	-----------	-----------------	-------	--

〈제45차〉

제2003-166호	'03.12.1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67호	'03.12.1	이첩기간 변경보고	신고심사국	
제2003-168호	'03.12.1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3-169호	'03.12.1	비위연직자 취업제한 관련 보고	신고심사국	

〈제46차〉

제2003-180호	'03.12.15	신고자 신분 공개여부 확인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3-181호	'03.12.15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금 요건 중 쟁점사항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82호	'03.12.1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83호	'03.12.15	신고 및 진정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II. 主要 報告要旨



요지 1	200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제2003-31호	제28차 전원회의(2003.3.17)	정책기획실
<p>I. 측정 개요</p> <p>□ 측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 71개 공공기관 (대민업무 비중이 낮은 기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위원회 19, 청 14, 시도 16, 교육청 16, 공기업 6 ◦ 대상업무 : 기관별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민업무 총 348개(기관 평균 4.9개) ◦ 조사대상 : 공공기관 접촉경험 민원인(2001.5.1~2002.4.30) 총 30,639명(기관 평균 432명) <p>□ 평가항목 및 가중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항목 :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정보공개 정도, 기준 절차 현실성 등 11개 설문항목 ◦ 가 중 치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 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 <p>□ 측정방식 : 민간조사전문기관(한국갤럽)에 의한 전화조사</p> <p>□ 조사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20개 기관) : 청, 공기업(7.2~8.17) ◦ 2차(51개 기관) : 중앙부처.청.위원회, 시도, 교육청(9. 25~11.23) <p>□ 산출방법 : 기관점수는 업무별 점수의 평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청렴도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의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의 점수×가중치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행정제도개선포부패통제의 점수×영역별 가중치 - 각 하위영역별 청렴도 : ∑영역내 항목점수×항목별 가중치 		

II. 전체기관 청렴도

□ **종합 청렴도 : 6.43점 (10점 만점 기준)**

□ **상위 하위영역별 청렴도**

- 상위영역 : 체감청렴도(6.52점), 잠재청렴도(6.33점)
 - * 체감과 잠재청렴도는 점수화 방식이 서로 달라 점수크기의 단순 비교는 곤란
 - 체감청렴도 : 부패인식(6.65점), 부패경험(6.39점)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7.33점), 행정제도(5.74점), 개인태도(6.54점), 부패통제(5.62점)
- 업무환경 영역의 '금품/향응 관행화'(7.78점), 개인태도 영역의 '업무처리의 공정성'(6.69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부패통제 영역의 '이익제기 용이성'(4.93점), 행정제도 영역의 '정보공개 정도'(5.47점)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표1 평가영역별 청렴도〉

상위영역	점수	하위영역	점수	평가항목	점수
체감청렴도	6.52	부패인식	6.65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	6.65
		부패경험	6.39	금품,향응 제공빈도	6.31
				금품,향응 제공규모	6.48
잠재청렴도	6.33	업무환경	7.33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	7.78
		행정제도	5.74	추가면담의 필요성	6.42
		개인태도	6.54	기준,절차의 현실성	5.95
		부패통제	5.62	정보공개의 정도	5.47
				업무처리의 공정성	6.69
		금품,향응의 기대	6.31		
		부패방지 노력도	6.10		
		이익제기 용이성	4.93		
		종합청렴도		6.43	

□ 취약분야

- **업무별**로는 계약업무의 금품/향응 제공자율이 6.30%,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 및 규모가 각각 0.21회, 5.51만원으로 타 업무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부패통제 강화 필요
 - * 계약업무 : 55개 기관 60개 (중앙부처11, 청10, 시도16, 교육청16, 공사7)
- **업종별**로는 건설업 응답자의 평균 금품/향응 제공률은 7.8%,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 및 규모는 각각 0.27회, 7.34만원으로 부패경험이 타 업종 응답자의 2배 이상으로 부패통제 강화 필요

〈표2 응답자 업종별 금품/향응 제공지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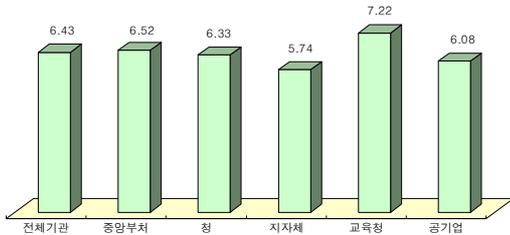
응답자 업종	제공자율	평균빈도	평균규모
농수산업	3.5	0.14	2.80
제조업	3.5	0.09	2.41
건설업	7.8	0.27	7.34
도/소매업	3.8	0.13	2.78
숙박/위생업	2.2	0.06	1.11
운수/창고/통신업	4.7	0.16	3.14
교육/연구	1.7	0.03	0.53
기타	1.6	0.05	1.07

주 : 기타는 금융/보험업, 보건/의료업, 사회복지, 공공행정업.

III. 기관그룹별 청렴도

□ **평가영역별 청렴도**

- **기관그룹별 종합청렴도**는 교육청이 가장 높고, 중앙부처,위원회, 중앙 청,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나타남.



- **평가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교육청이 가장 높았으며,
 - 청단위 기관은 행정제도 영역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자치단체는 부패경험 영역이 가장 낮으며, 공기업은 개인태도, 부패인식, 업무환경 영역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3 평가영역별 청렴도〉

기관그룹	청렴도	부패인식	부패경험	체감청렴도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잠재청렴도
전체	6.43	6.65	6.39	6.52	7.33	5.74	6.54	5.62	6.33
중앙부처	6.52	6.82	6.59	6.71	7.39	5.65	6.61	5.56	6.33
중앙청	6.33	6.21	7.09	6.63	6.91	5.56	6.16	5.44	6.03
지자체	5.74	6.34	4.11	5.26	7.08	5.73	6.38	5.52	6.20
교육청	7.22	7.32	7.91	7.61	8.06	6.06	7.10	6.01	6.84
공기업	6.08	6.20	6.10	6.15	6.80	5.64	6.12	5.46	6.02

□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 금품/향응 제공자율, 제공빈도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기업, 중앙부처, 중앙 청, 교육청의 순임

〈표4 기관그룹별 금품/향응 제공지표〉

기관그룹	제공자율(%)	응답자 평균제공빈도(회)	응답자 평균제공규모(만원)
전제기관	4.1	0.13	3.00
중앙부처	4.0	0.11	2.77
청	3.5	0.09	2.44
지자체	5.6	0.21	4.76
교육청	3.1	0.07	1.59
공기업	4.3	0.17	4.09

- 금품/향응 제공자의 빈도는 '1번'(26.3%), '2번'(29.5%)이 55.8%로 과반수 이상이나 '8번 이상'도 11.8%를 차지
- 금품/향응 제공자의 규모는 '6~15만원'이 19.5%, '16~30만원'이 18.5%로 다수이나 '201만원 이상'도 15.5%로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중앙청과 지자체는 '201만원 이상'의 비중이 각각 18.6%, 18.4%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5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단위 : %)

기관유형	금품/향응 제공 빈도							금품/향응 제공 규모					
	1번	2번	3번	4~5번	6~7번	8번 이상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만원 이상
전체	26.3	29.5	18.0	11.4	2.9	11.8	7.5	19.5	18.5	12.7	14.9	11.3	15.5
중앙부처	32.0	27.6	18.8	10.7	3.1	7.8	4.8	25.2	20.6	12.7	10.4	10.7	15.5
청	21.6	33.4	20.6	13.3	2.7	8.5	5.8	11.5	25.0	10.6	17.4	11.1	18.6
지자체	21.1	30.3	16.8	13.2	2.7	15.8	7.1	11.0	18.3	16.0	18.9	10.2	18.4
교육청	25.8	33.5	18.0	9.0	3.1	10.7	11.9	24.1	16.2	8.6	15.6	10.6	13.0
공기업	27.1	22.6	18.4	13.1	2.9	15.9	7.7	14.1	15.4	11.8	18.1	16.6	16.3

IV. 기관업무별 청렴도

<중앙부처.위원회>

- 부패인식에 비해 부패경험 영역이 상대적으로 열등
 - 특히, **지도단속, 인허가 관련 업무**는 부패실태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행정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중앙 청>

- 부패인식에 비해 부패경험 영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기준.절차의 현실성(5.74점), 정보공개(5.32점), 이의제기 용이성(4.73점) 영역의 청렴도가 낮게 나타남.
 - 세금부과, 단속 및 처벌**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는 부패실태 뿐만 아니라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 확대 및 이의제기가 용이하게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부패경험(4.11점)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음
 - 지자체 중에서도 9개 도 보다 7개 특별.광역시의 청렴도가 더 낮음
 - 지자체 공통 측정업무(6개) 중 **‘건축 관련 업무’**는 부패경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추가면담 축소, 이의제기 용이성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공사 관련 업무**는 부패인식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 응답자 평균 금품 제공빈도 및 규모가 각각 다른 업무(약0.15회, 약2만원)의 2배 이상(약0.3회, 약9만원)으로 부패경험에 대한 통제 필요
 - 농지전용 허가 업무(도)**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준.절차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추가면담 축소가 필요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업무(특별.광역시)**는 기준.절차의 현실성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교 육 청>

- 모든 항목들이 전체평균을 상회하나,
 - 공통 측정업무(4개) 중 **‘물품 및 공사관련 업무’**는 응답자 평균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가 각각 다른 업무(0.02회, 0.4만원)의 10배 이상(0.23회, 5.3만원)으로 부패통제 강화 필요
 - 인사업무**는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공개 확대 및 이의제기를 용이하게 할 필요
 - 학원업무**는 기준.절차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이의제기 용이성 제고 등 제도적인 보완 필요
- 공기업**은 업무환경(6.80점), 개인태도(6.12점), 부패방지 노력도(5.84점)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공사관련 업무**는 부패경험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
 - 보상관련 업무**는 부패경험은 양호하나 기준.절차의 현실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 필요

요지 2	2002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제2003-32호	제28차 전원회의(2003.3.17)	정책기획실
I. 평가개요 □ 2002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42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교육자치단체 등 총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기권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8개 공통과제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자율과제에 대하여 “계획-집행-성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가 7인으로 「시책평가기획단」을 구성하여 총괄 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케 하고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평가모델 개발 및 서면.현장평가 결과 종합분석 실시 		
II. 평가결과 □ 종합적인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기관이 국가적 당면과제인 “부패척결”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각적인 과제 발굴과 내실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패방지 기여도 제고에 고심한 흔적이 돋보였음.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노력도에 많은 차이가 있고,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적거나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가 편중되어 있으며 ※ “인사운영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78.1점), “반부패 교육 및 홍보활동”(72.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인터넷 사용 인구의 급증 등 IT 시대에 걸맞는 행정환경으로 변화해야 할 과제들이 비교적 미흡한 평가를 받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67.5점),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69.9점) 특히, 계획-집행-성과 등 3개 평가지표 중에서 부패척결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추진체계”(67.1점), “기관장의 관심도”(70.3점) <종합순위 상위 10개 우수기관(3부, 1처, 3청, 3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기관표창 : 서울특별시, 해양수산부, 대전광역시, 환경부, 관세청 · 국무총리 기관표창 : 국가보훈처, 조달청, 국방부, 국제청, 부산광역시 □ 총 74개 기관을 특성 및 규모를 감안하여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 단위의 기관이 평균 60.1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광역자치단체 59.6점, 교육자치단체 58.4점, 중앙부처위원회 55.9점 순위로 나타남 중앙부처.위원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정책기획 기능이 많은 기관의 특성상 직접 체결하는 각종 계약 업무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65.0)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6개 평가항목 중에서 “사업계획 수립”(73.3점), “기관장 관심도”(67.2점), “부패방지 추진체계”(67.0점)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국가적 당면과제인 부패관련 시책의 중요도가 다른 업무에 비해 미약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임
--

<상위 4개 우수기관>

·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 청 단위의 경우

- 다른 그룹의 기관에 비해 과제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계획-집행-성과의 연계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인사운영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승진 다면평가제도’, ‘보직 공모제도’, ‘인사관리 시스템(PMS)’ 등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67.2점)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구체적인 운영실적 부족으로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상위 3개 우수기관>

·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 비교적 집행기능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행정과 관련된 과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점임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66.3점),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66.4점)

-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66.3점)가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고, 부패방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상위 3개 우수기관>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 비교적 집행기능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업무의 대부분이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행정과 관련된 과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점임.

※ “행정정보 공개 확대”(65.5),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65.5)

- 특히, 공개되는 행정정보의 내용이 각종 통계자료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관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또한, 부패방지에 대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소요예산의 투입의욕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계획-집행-성과의 일반적인 업무 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사업계획 수립”(73.9점), “목표의 적절성”(69.6점), “부패방지 추진체계”(64.0점)

<상위 3개 우수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 8개 공통과제와 자율과제에 대한 기관별 추진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 지금까지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제에 대하여는 관심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추진 또는 부패방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실적 미흡 등의 현상이 나타남

○ 특히, 「공개행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경우>

- 인허가·제증명 민원관련 온라인 구축 및 운영실적이 60점 만점에 평균 23.1점으로 매우 저조하여 8개 공통과제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 인허가·제증명 민원관련 온라인 구축실적 평가결과(24점 만점/평균 8.8점)

· 부, 처, 위원회 단위(8.8점) · 청 단위(5.8점)
· 시도 단위(4.5점) · 교육청 단위(15.9점)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실적 평가결과(36점 만점/평균 13.1점)

· 부, 처, 위원회 단위(13.1점) · 청 단위(13.6점)
· 시도 단위(13.1점), · 교육청 단위(12.7점)

- 여타 지표에 비해 “기관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지방기관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 관심도” 평가결과(100점 만점/평균 70.7점)

· 부, 처, 위원회 단위(72.3점) · 청 단위(73.2점)
· 시도 단위(71.1점) · 교육청 단위(66.3점)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의 경우>

- 각종 공사 및 사업 또는 집행기능의 다소 여부에 따라 기관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남.

※ 청렴서약제 시행실적 평가결과(18점 만점/ 평균 9.7점)

· 부, 처, 위원회 단위(6.4점) · 청 단위(8.1점)
· 시도 단위(12.6점) · 교육청 단위(11.7점)

※ 전자입찰제 시행실적 평가결과(21점 만점/ 평균 13.0점)

· 부, 처, 위원회 단위(7.7점) · 청 단위(7.3점)
· 시도 단위(17.0점) · 교육청 단위(20.0점)

※ 수의계약제도 개선실적 평가결과(21점 만점/ 평균 15.6점)

· 부, 처, 위원회 단위(14.5점) · 청 단위(15.3점)
· 시도 단위(16.3점) · 교육청 단위(16.1점)

-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렴서약제와 전자입찰제의 의무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에 수의계약제도 개선은 ‘원가계산의 객관화’, ‘책임조달체계 확립’ 등 나름대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반부패 교육 및 홍보”의 경우>

- 대부분의 기관이 통합교육 참여, 순회교육, 반부패 관련 강좌 개설 등 교육활동은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대국민 홍보활동은 전반적으로 계획성이 없고 목표의 구체성이나 적절성을 파악하기가 곤란함.

※ 반부패 교육실적 평가결과(30점 만점/ 평균 23.0점)

· 부, 처, 위원회 단위(23.6점) · 청 단위(24.6점)
· 시도 단위(20.7점) · 교육청 단위(21.2점)

※ 반부패 홍보실적 평가결과(20점 만점/ 평균 10.0점)

· 부, 처, 위원회 단위(9.4점) · 청 단위(10.3점)
· 시도 단위(10.6점) · 교육청 단위(9.5점)

<“비리공직자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의 경우>

- 대부분의 기관이 내부적으로 비리공직자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법적인 범위내에서 비리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 비리공직자 신고센타 설치 운영실적 평가결과(20점 만점/ 평균 17.7점)

· 부, 처, 위원회 단위(18.8점) · 청 단위(16.9점)
· 시도 단위(18.6점) · 교육청 단위(16.5점)

- 그러나, 내부적발의 경우 조직의 속성상 주로 하위직급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치방법도 경정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됨.

<“인사운영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의 경우>

- 대부분의 기관이 채용, 승진, 전보, 평가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집중 추진하여 8개 공통과제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인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관장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법도 시도하였음.

<“행정정보 공개 확대”의 경우>

-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행정정보 공개 신청 및 처리실적 평가결과(30점 만점/ 평균 22.1점)

- 부, 처, 위원회 단위(22.8점) · 청 단위(21.6점)
- 시도 단위(22.3점) · 교육청 단위(21.8점)

- 또한, 비공개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무조건 비공개로 처리하고, 기관간에 유사한 정보임에도 공개/비공개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행정정보 공개 불가능 목록 축소실적 평가결과(30점 만점/ 평균 20.8점)

- 부, 처, 위원회 단위(21.6점) · 청 단위(22.1점)
- 시도 단위(21.0점) · 교육청 단위(18.6점)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의 경우>

- 대부분의 기관이 각종 위원회와 지도단속 과정 등을 통해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반부패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고, 책임회피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음.

<“자체감찰 역량 강화”의 경우>

- 대부분의 기관이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과 자체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관심 여부 및 기관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자율과제는 총 654개가 제출되었으나 기관별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과제량이나 부패방지에 대한 기여도의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났음.
-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가 75개로서(11%) 별로 많지 않은 것은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고,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임.

III. 금후 조치계획

- 2002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보고서 확정 통보(74개 평가기관)
-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계획 수립 통보
 - 핵심사항(평가과제,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기관의 의견수렴 후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계획 확정 통보

附 錄



1. 公務員의 清廉維持 등을 위한 行動綱領
2. 全員會議 分科委員會 開催現況
3. 腐敗防止委員會 委員 名單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의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원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 .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 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신규입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기관별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원회의,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전원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회 : 23회, 심의의결 : 총 182 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예규,훈령, 기타	
182건	132건 (72.5%)	102건 (77.4%)	11건 (8.3%)	11건 (8.3%)	8건 (6%)	50건 (27.5%)

• 신고사건 처리현황

합 계	기관별 이첩건수							재조사 요 구	기타
	소 계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교육인적 자 원 부	행 정 자치부	보 건 복지부		
102건 (92%)	94건 (32.4%)	33건 (25.5%)	26건 (17.6%)	18건 (4.9%)	5건 (2.9%)	3건 (2.9%)	3건 (5.9%)	5건 (5%)	3건 (3%)

- 기타기관(7건) : 국제청1, 국가보훈처1, 국방부1, 과학기술부1, 병무청1, 강원도1

• 제도개선 기관별 권고현황

권고기관	재 정 경제부	교육인적 자 원 부	농림부	해 양 수산부	행 정 자치부	산 업 자원부	보 건 복지부
14개 기관	2건	2건	2건	2건	1건	1건	1건

노동부	건 설 교통부	병무청	중 소 기업청	산림청	국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제도개선 권고 목록

제 목	권고기관	권고일자
감척어선사업제도 개선 권고안	해양수산부	'03. 4. 16.
요양급여 부정징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노동부	'03. 12. 12.
병역특례제도 개선 권고안	병무청	'03. 7. 14.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교육인적자원부	'03. 7. 29.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중소기업청	'03. 8. 20.
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3. 9. 3.
면세유공급제도 개선 권고안	재정경제부	'03. 10. 21.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교육인적자원부	'03. 10. 14.
건설공사 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03. 10. 23.
농지전용제도 개선 권고안	농림부	권고준비중
산지전용제도 개선 권고안	산림청	"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최 : 55회, 심의의결 : 총 146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146건	142건 (97.3%)	126건 (77.4%)	4건 (8.3%)	12건 (8.3%)	4건 (2.7%)

• 각 분과위원회별 개최현황

구 분	개 회	처 리	의결사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제1분과위원회	17회	33건	32건	30건	2건		1건
제2분과위원회	20회	57건	55건	50건		5건	2건
제3분과위원회	18회	56건	55건	46건	2건	7건	1건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이 남 주 (李南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감사원 부정방지대책 위원장 .정치개혁추진법국민행동의회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연대 부회장	상임위원
위 원	채 일 병 (蔡日炳)	.총무처 복무감사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소경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사무처장)
위 원	이 상 환 (李相煥)	.국회 정책연구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연구1실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상임위원
위 원	이 진 우 (李珍雨)	.변호사 .서울지검, 서울고검 검사 .11, 13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국회 추천
위 원	박 용 일 (朴容逸)	.변호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 변호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국회 추천
위 원	박 연 철 (朴淵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추천
위 원	최 세 모 (崔世模)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추 천
위 원	김 오 수 (金吾洙)	.변호사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추 천
위 원	조 수 정 (曹秀靜)	.변호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부산지법,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장 추 천

2003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심의 . 의결례집

<제2집>

발행일 : 2004년 1월
발행처 :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관리관실
TEL : (02)2126-0090-92
FAX : (02)2126-0307

인쇄처 : 중앙인쇄사
TEL : (02)736-2866 ~ 7
FAX : (02)736-8249